


# 2021

## 통합22차 정기총회 (17차 대의원총회)

- 2021년 02월 27일(토) 오후 2시
- 서면 총회 (유튜브 생중계)  YouTube

안건 요약 자료집



# 총회 순서

인 사

활동 영상 상영

서면총회 개최 승인

서기 선출 승인

2021년도 총회의사록 서명날인인 승인의 건

전차회의록 (통합21차 정기총회 의사록) 승인의 건 03

## [상정 의안]

제1호 의안      2020년 종합감사보고 승인의 건 11

제2호 의안      2020년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승인의 건 15

제3호 의안      2020년 사업예산 변경 사후 승인의 건 17

제4호 의안      2020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안) 승인의 건 21

제5호 의안      2020년 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51

제6호 의안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55

제7호 의안      규약 변경(안) 승인의 건 61

제8호 의안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65

제9호 의안      차입금 한도 승인의 건 87

제10호 의안     2020년 조합원수 및 출자금 확정 승인의 건 89

※ 건강검진센터 확장 이전 특별 결의(안) 91

기타 의안



# 통합21차(전차) 정기총회 의사록

## 전차회의록

의사록은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서명날인의 확인을 마쳤습니다.  
자료집의 가독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체합니다.

원본대조필 : 이사장 나준식

###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통합21차 정기총회(대의원총회) 의사록

1. 회 의 명 :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통합21차 정기총회(대의원총회)
2. 공고일시 : 2020년 4월 27일(월)
3. 개최일시 : 2020년 5월 09일(토) 오후 2시 ~ 오후 3시 10분
4. 개최장소 : 한의원건물 3층 [대덕구 계족로 663번길 22, 3층(법동)]
5. 정기총회 의장 : 나준식 이사장

#### 가. 성원 확인

의장이 성원보고를 요청하다. 이자우 조직국장이 총원 110명 중, 참석 61명임을 보고하다. 이에 의장은 정관에 의거하여 대의원 과반이상 참석으로 본 회의가 정식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선포하다.

#### 나. 개회선언

성원을 확인한 의장이 오후 2시 05분에 대의원총회 개회를 선언하다.

#### 다. 의사록 서기 및 서명날인인 선임

의장이 참석 조합원의 추천을 받아 서기로는 박현주, 임영신 조합원을, 서명날인인으로 김

준형, 김문경, 한영수 대의원을 선임하고, 참석 대의원에게 승인을 요청하다. 다수의 대의원들의 동의와 재청을 통해 서기와 서명날인인을 확정하다.

#### **라. 경과보고**

의장이 정관, 규약,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총회가 성사되기까지의 경과를 주문하다. 이에 이원호 총회준비위원장이 2019년 12월 이사회 승인으로 총준위를 구성하여 2020년에 총 4회차 회의를 진행한 내용이 담긴 자료집 37쪽 경과보고서를 제시하였고, 의장이 참석 대의원에 총회 개최 일정에 대한 이견이 없음을 물어 확인하고 오늘의 이 회의가 합당하게 개최되었음을 선포하다.

#### **마. 의사일정확정**

의장이 공고와 자료집 55쪽에 상정된 의안들에 대한 처리 순서와 이외에 추가안건이 있는지 참석 대의원에게 확인하다. 원안대로 총회 의사 일정을 다수의 대의원이 동의하고 재청하다. 의장이 다른 의견이 없는지 다시 확인하고 의사일정을 원안대로 확정하다.

#### **바. 전차의사록 낭독 및 승인**

의장이 지난 통합20차 정기총회 의사록을 승인해야 함을 설명하고 전차 의사록 낭독을 요청하다. 전차 의사록 서명날인인 이자우 대의원이 전차 의사록 낭독을 대신해 자료집 39쪽~52쪽에 작성되어 있는 전차 회의록을 서면으로 확인할 것을 제안하고, 참석한 대의원 대다수가 동의, 재청하여 전차 의사록을 승인하다.

#### **사. 상정의안 심의**

##### **1) 제1호 의안 : 2019년 종합감사보고 승인의 건**

조세종 감사가 앞으로 나와 자료집 55쪽~59쪽을 참고하여 감사보고를 하다. 사업부문 감사에서는 3년 연속 흑자경영을 이루었는데,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선도하며 자신감을 얻었고, 회계부분 감사에서는 주요성의 관점에 따라 적절하게 재정이 운영되었음을 보고하다. 의장이 감사보고서를 원안 대로 승인하는데 동의와 재청을 물어, 이선아 대의원의 동의와 봉미경 대의원이 재청을 한 후, 의장이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2019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승인하다.

##### **2) 제2호 의안 :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승인의 건**

의장이 이 의안에 대해 2020년 3월 26일 이사회 승인 후, 2020년 3월 28일에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을 실행하였음을 설명하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총회 연기로 환급요청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부득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탈퇴조합원 출자금을 환급 하였음을 부연 설명하다. 의장이 탈퇴조합원의 출자금 환급 승인을 참석 대의원에게 동의를 요청하자 남은순 대의원이 동의하고, 박종례 대의원이 재청하여 2019년도 탈퇴조합원 125명에게 출자금 22,945,600원 환급을 참석 대의원 만장일치로 승인하다.

**3) 제3호 의안 : 2019년 사업예산 변경 사후 승인의 건**

의장이 2019년 사업예산 변경 사후 승인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여, 한영수 사무처장이 자료집 67쪽을 참고하여 2019년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예산 중 변경 집행된 사업예산 전용 집행 내역 대하여 설명하다. 의장이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여인표 대의원의 동의와 박정희 대의원의 재청으로, 2019년 사업예산 변경 사후 승인의 건을 참석 대의원 만장일치로 승인하다.

**4) 제4호 의안 : 2019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의장이 2019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보고를 요청하여 한영수 사무처장이 앞으로 나와 총회 자료집을 토대로 2019년 사업보고를 하고, 정운재 이사가 앞으로 나와 2019년 결산(안)을 보고하다. 참석 대의원 대다수와 김문경 대의원의 동의 및 김성훈 대의원이 재청을 한 후, 의장이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2019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을 참석 대의원 만장일치로 승인하다.

**5) 제5호 의안 : 2019년 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의장이 2019년 발생한 당기 순이익 64,278,686원이 발생하였고, 발생한 잉여금은 정관에 따라 누적 손실금 915,674,131원에 보전할 것을 요청하다. 위 의안에 대해 이지명 대의원이 동의하고 전경화 대의원이 재청하여 2019년 당기 순이익 64,278,686원은 기존의 손실금 915,674,131원에 보전하는 것을 참석 대의원 만장일치로 승인하다.

**6) 제6호 의안 : 정관 및 규약 개정(안) 승인의 건**

의장이 자료집 199쪽의 정관 개정 사유에 대한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한영수 사무처장에게 부가 설명을 요청하다. 이에 한영수 사무처장이 앞으로 나와 보건복지부의 의료사협 감사 후속 권고사항에 따른 조문 및 협동조합기본법의 상위법령 위배에 조문 개정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자료집 개정안에 누락된 검진센터 확장에 따른 공간 확장으로 의원 3층의 주소 변경 개정안을 추가 제안하다. 이에 의장이 주소 변경 수정안을 참석 대의원에게 채택할 것을 요청하고 모든 참석 대의원이 동의와 재청으로 의원 사업장 주소에 3층까지 포함할 수정안을 승인하다. 의장이 수정된 개정안에 대하여 참석 대의원에게 승인 요청을 하고 유인수 대의원의 동의와 이자우 대의원이 재청을 한 후, 의장이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정관 및 규약 개정(안)을 참석 대의원 만장일치로 승인하다.

**정관개정(안) 신규대조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63 번길 26(법동)에 둔다. ② 지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7(탄방동)에 둔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추가로 지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63 번길 26(법동)에 둔다. ② <삭제, 2020. 05. 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둔산의료기관 폐업에 따른 조항 삭제</li> <li>• 민들레의원 소재지의 층수 추가</li> </ul>

<p>③ 의료기관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6, 1층(법동)</p> <p>2.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한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63번길 22, 2층(법동)</p> <p>3.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치과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63번길 28, 2층(법동)</p> <p>4.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치과의원: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7, 2층(탄방동)</p>	<p>③ 의료기관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의원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6, 1층, 2층, 3층(법동) &lt;개정, 2020. 05. 09&gt;</u></p> <p>2.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한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63번길 22, 2층(법동)</p> <p>3.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치과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63번길 28, 2층(법동)</p> <p>4. <u>&lt;삭제, 2020. 05. 09&gt;</u></p>	
<p><b>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b>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p> <p>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소비자조합원 : 조합이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자</p>	<p><b>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b>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p> <p>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소비자조합원 : 조합이 제공하는 사업을 이용하는 자 &lt;개정, 2020. 05. 09&gt;</u></p>	<p>• 용어 변경</p> <p>(보건복지부 권고사항)</p>
<p><b>제14조(탈퇴)</b>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p> <p>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p> <p>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p> <p>2. 사망한 경우</p> <p>3. 파산한 경우</p> <p>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p> <p>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p>	<p><b>제14조(탈퇴)</b>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p> <p>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p> <p>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p> <p>2. 사망한 경우</p> <p>3. <u>&lt;삭제, 2020. 05. 09&gt;</u></p> <p>4. <u>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선고를 받은 경우 &lt;개정, 2020. 05. 09&gt;</u></p> <p>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p>	<p>• 조항 삭제</p> <p>• 용어 변경</p> <p>(보건복지부 권고사항)</p>
<p><b>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 환급 청구권)</b></p> <p>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탈퇴 또는 제명 당시 먼저 지급한 후 총회에서 승인한다.</p>	<p><b>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 환급 청구권)</b></p> <p>④ <u>제1항에 따른 환급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의 총회 승인에 따라 반환한다. &lt;개정, 2020. 05. 09&gt;</u></p>	<p>• 이사회 승인 단서 조항 삭제. 협동조합기본법 위배.</p> <p>(보건복지부 권고사항)</p>
<p><b>제18조(출자)</b> ① 조합원은 5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고,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하며, 조합원 1인당 최저출자금은 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p>1.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p> <p>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p> <p>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p> <p>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p>	<p><b>제18조(출자)</b> ① 조합원은 5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고,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하며, 조합원 1인당 최저출자금은 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u>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최저출자좌 수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lt;개정, 2020. 05. 09&gt;</u></p> <p>1.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p> <p>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p> <p>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p> <p>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p>	<p>• 단서 조항 지구 수정.</p>



<p>5.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회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p> <p>6.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p> <p>㉔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며 총자산 대비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p>	<p>5.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회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p> <p>6.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p> <p>㉔ &lt;삭제, 2020. 05. 09&gt;</p>	
<p><b>제45조(임원의 정수)</b>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5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p>	<p><b>제45조(임원의 정수)</b>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와 <u>1명 혹은 2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u> 다만, 이사는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lt;개정, 2020. 05. 09&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 정수 수정.</li> </ul> <p>(보건복지부 권고사항)</p>
<p><b>제50조(임원의 임기)</b>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b>제50조(임원의 임기)</b>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u>임기 만료일은 총회에서 차기 임원 선출시 까지로 한다.</u> &lt;개정, 2020. 05. 09&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원 임기의 명확화</li> </ul>
<p><b>제58조(운영의 공개)</b></p> <p>㉔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관, 규약, 규정</li> <li>2. 사업결산보고서</li> <li>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의 활동 상황</li> <li>4. 사업결과보고서(정관 제61조의 필수사업은 반드시 포함)</li> <li>5.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현황</li> </ol>	<p><b>제58조(운영의 공개)</b></p> <p>㉔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관, 규약, 규정</li> <li>2. 사업결산보고서</li> <li>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의 활동 상황</li> <li>4. 사업결과보고서(정관 제61조의 필수사업은 반드시 포함)</li> </ol> <p>5. &lt;삭제, 2020. 05. 09&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항 5호 삭제.</li> </ul> <p>사업미실시에 대한 조항 삭제.</p>
<p><b>제61조(사업의 종류)</b>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주민의 건강과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의료시설, 요양시설, 보육시설, 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시설, 건강증진시설</li> <li>나. 생활습관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li> <li>다. 취약계층과 조합원 및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지원 사업</li> <li>라. 질병예방 및 보건예방 교육사업</li> <li>마. 지역내 의료인과 연대 및 협조 사업</li> <li>바. 지역통화 운동 등 협동경제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li> <li>사. 조합원의 운동 및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시설</li> </ul> </li> </ol>	<p><b>제61조(사업의 종류)</b>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주민의 건강과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의료시설, 요양시설, 보육시설, 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시설, 건강증진시설</li> <li>나. 생활습관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li> <li>다. 취약계층과 조합원 및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지원 사업</li> <li>라. 질병예방 및 보건예방 교육사업</li> <li>마. 지역내 의료인과 연대 및 협조 사업</li> <li>바. 지역통화 운동 등 협동경제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li> <li>사. 조합원의 운동 및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시설</li> </ul> </li> </ol> <p>아. 기타 자원봉사활동 사업 &lt;신설, 2020. 05. 09&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종류에 자원봉사 활동 사업 조항 추가.</li> </ul> <p>(보건복지부 권고사항)</p>
<p><b>제62조(사업의 이용)</b> 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총공급의 100분의 50의</p>	<p><b>제62조(사업의 이용)</b> ① 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총공급의 100분의 5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총공급고 산정 기준 조항 추가.</li> </ul>

<p>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li> <li>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li> <li>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li> <li>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li> <li>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li> <li>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li> <li>7. 해당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li> <li>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li> </ol>	<p>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li> <li>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li> <li>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li> <li>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li> <li>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li> <li>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li> <li>7. 해당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li> <li>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li> </ol> <p><a href="#">② 조합의 공급고의 선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으로 한다. &lt;신설, 2020. 05. 09&gt;</a></p>	<p>(보건복지부 권고사항)</p>
--	---	---------------------

### 7) 제7호 의안 : 임원(이사) 선출의 건

의장이 임원 선출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의장직을 위임하고, 의사 진행을 요청하여, 김창일 선거관리위원장이 의장석에 착석하다. 의장이 자료집 205쪽을 참고하여 선거를 진행하기까지의 경과를 보고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고하고 입후보하였음을 설명하다.

의장이 선출 임원 확정 정족수 이사 13명, 감사 2명에 대하여 이사후보 13명, 감사후보 2명, 총 15명이 임원 후보로 등록하였음을 설명하고, 정관 및 규정에 따라 정족수 이내 입후보한 경우, 투표 방법은 총회 참석 대의원이 결정할 수 있음을 설명하다. 의장이 선거 방법을 요청하고 김진호 대의원이 거수로 일괄 찬반 여부를 확인하기를 제안하다. 의장인 참석 대의원에게 거수로서 일괄 찬반 투표할 것을 제안하고 참석 대의원 만장일치로 거수 동의를 표시하다. 의장이 임원 후보들은 앞으로 나와달라 요청하고 임원 후보들이 앞으로 나와 대의원들을 향해 일렬로 서서 인사하다. 의장이 앞에 나온 임원 후보자들의 선출 찬성에 대하여 거수로서 투표를 요청하고 참석 대의원 만장일치로 거수하여 찬성 투표하다. 의장이 이사 후보 13명, 감사 후보 2인에 대하여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참석 대의원에게 승인 요청하고, 한영수 대의원이 동의하고 김준형 대의원이 재청하다. 의장이 임원 선출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다시 확인하고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언하다. 의장이 선출된 임원을 대표하여 박명화 선출 이사에게 소감을 묻고 배워가면서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참석 대의원에게 전하다.

의장이 이사장 선출은 선출 이사 중 호선으로 선출됨을 참석 대의원에게 설명하고, 이를 위해 정회를 선언하다.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시 이사회 결과를 받은 의장이 총회 속개를 선언하고 나준식 이사를 이사장으로 호선되었음을 선포하다. 의장이 이사장으로 호선된 나준식 이사장에 대하여 참석 대의원에게 또 다른 추천 이사장 유무를 묻고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다. 의장이 호선된 나준식 이사장에 대하여 참석 대의원에게 승인을 요청하여 만장일치로 승인을 확인하고 이지명 대의원이 동의하고 황신애 대의원이 재청하다. 이에 의장이 민들레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하다. 의장이 당선된 나준식 이사장에게 소감을 요청하고 의장석을 나준식 이사장 당선인에게 위임하다.

### 〈임원 선출 결과〉

구 분	인원수	당 선 인
이사장	1인	나 준 식
이사	12명	국현정, 김성훈, 김종철, 김찬옥, 남은순, 박명화, 박봉희, 봉미경, 서원모, 이원호, 정운재, 최미나
감사	2명	조세종, 배남익
계		15명

#### 8) 제8호 의안 :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의장이 총회 자료집 213쪽부터의 내용에 대하여 2020년도 사업기조 및 중점 사업 계획을 설명하다. 중점사업 중 하나인, 민들레가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여 구성된 ‘건강리더협동조합’을 설명하고 건강리더협동조합 이사장 인사말을 요청하다. 이에 김영순 이사장이 앞으로 나와 건강리더협동조합의 사업취지를 설명하다.

의장이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정운재 이사에게 요청하여 정운재 이사가 앞으로 나와 2020년도 수립예산을 설명하다. 정운재 이사가 2020년도 예산은 약 1천만원 흑자 편성을 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 등 돌발적인 사업환경 변수가 생겨 조합원과 대의원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부연 설명하다.

의장이 2020년도 사업계획안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참석 대의원에게 승인을 요청하여, 박병철 대의원이 동의하고 봉미경 대의원이 재청하다. 의장이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2020년도 사업계획안 및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참석 대의원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 9) 제9호 의안 : 차입금 한도 승인의 건

의장이 273쪽의 차입금 한도를 20억원 이내로 하는 안건을 설명하고 참여 대의원에게 승인요청을 하다. 참석 대의원 중 한영수 대의원의 동의와 오민우 대의원의 재청으로 2020년도 차입금 최고 한도를 현재의 차입금 1,578,909,099원을 포함한 총 합계액 기준 20억원 이내로 할 것을 참석 대의원 만장일치로 승인하다.

#### 10) 기타 의안

의장이 자료집 28쪽에 수록된 조합 현황 중 2019년 12월 31일 기준, 총 조합원수 3,797명, 출자금 총액 1,146,439,922원에 대한 총 출자좌수 114,336좌에 대하여 확정 승인을 요청하여, 전경화 대의원이 동의하고 홍은영 대의원을 포함한 대다수 대의원이 재청하여 2019년 12월 31일 기준 조합원수 3,797명, 출자좌수 114,336좌, 출자액 1,146,439,922원임을 확정하다.

**아. 폐회선언**

의장이 이외의 여타 의안이 있는지를 대의원에게 묻고, 없음을 확인하여 오후 3시 10분에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통합21차 정기총회 폐회를 선언하다.

**자. 의사록 서명 날인**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통합21차 정기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서명날인인 전원이 기명날인하다.

**차. 참석 대의원 명단(61명)**

국현정	김경성	김문경	김성훈	김영순	김옥순	김준형	김진호
김찬옥	김창원	김혜원	나준식	남은순	박미양	박병철	박정희
박종례	박지숙	박현주	봉미경	서원모	석연희	석희옥	송민호
양영미	여인표	오민우	유난형	유미경	유승화	유인수	윤미경
윤자윤	윤주현	이경민	이선아	이은영	이은주	이자우	이지명
이현소	임영신	전경화	전성옥	정운재	조세종	조영숙	진옥화
천수경	최미나	최수이	최순례	최윤나	최은남	최은숙	최장희
추경미	한영수	홍은영	홍춘기	황신애			이상 61명

※ 성원보고 후 참석 대의원 : 신용희, 유병규, 임경옥, 장현미, 최채옥 (5명)

2020 5. 9.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인감)

김준형 (인감)

서명  
날인인

김문경 (인감)

의 장 나 준 식 (인감)

한영수 (인감)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법무부 고시 제2015-0358호(340.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 따른 의사록 공증 제외대상 법인임.

## 제1호 의안 2020년 종합감사보고 승인의 건

- 의결주문: 2020년도 종합감사보고서를 승인하여 주십시오.
- 관계조항: 정관 제33조 제6호, 제53조 제1항

※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6. 감사보고서의 승인

※ 제53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연2회 이상 조합의 업무진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 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 2020년 종합감사보고서

감사는 정관 제5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20년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 아 래 -

### 1. 감사 일시

- 사업부문 : 2020년 8월 25일 (상반기)  
2021년 2월 09일 (2020년 상·하반기 종합)
- 회계부문 : 2020년 8월 13일 (상반기)  
2021년 2월 18일 (2020년 상·하반기 종합)

2. 감사 범위 : 2020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 회계 부문

3. 감사 근거 : 정관 제53조에 의함

### 4. 감사 결과 보고

#### 가. 사업 부문

2020년 한 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더구나 자영업자 및 소득이 낮은 계층과 고령층에게는 삶이 파괴되고 생명이 위협을 받는 참담한 한 해였습니다. 다른 한편, 우리사회는 전세계적 팬데믹을 겪으면서 ‘너의 건강으로 나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으며 이는 의료사협이 그동안 주장하고 실천해 왔던 건강한 관계 속에서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과도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들레의료사협은 정말로 많은 일들과 사업들을 해 내었고, 매우 값진 성과들을 이루어 냈습니다. ‘민들레형 동네돌봄을 만드는 해’를 지내면서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 민관 파트너십 및 다른 기관과의 융복합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었으며 재정적으로도 어느 해보다 높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민들레의 코로나 19의 위기 대응 능력과 민들레가 지역사회에 보여준 성과들은 미래 고령화사회에서도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통합돌봄체계를 갖출 컨트롤 타워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만큼

직원 여러분의 힘과 땀을 쏟으신 결과이며 조합원들의 높은 참여의 결과이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합은 '민들레형 동네돌봄'을 위한 계획, 진행, 성과, 의견청취 등 많은 과정에 조합원, 특히 대의원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비대면의 상황이었지만 이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무엇보다도 조합원과 임직원, 그리고 일차의료센터와 지역사회의료센터,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조직협력국과 사무처 등 모든 구성원이 함께 우리의 정체성과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장단기 사업기조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 우리의 사명을 공유하고 습득하는 일을 무엇보다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작년 한 해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계획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낸 한 해였습니다. 그보다도 더 귀중한 성과는 조합원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한 해를 무사히 지내셨다는 데에 있습니다. 2021년에도 계속해서 방역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며, 지역사회의 건강이 우리의 건강임을 확인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한 해를 만들어 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나. 회계 부문

본 감사인은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2020년 12월 31일자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민들레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경영자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본 감사인의 감사결과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재무제표가 “대한민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귀 민들레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2020년 상반기 경영성과는 예산대비 철거비용 등의 추가지

출과 코로나19 등의 예상치 못한 재해로 인하여 당기순손실 103,132,252원을 기록하였으나, 하반기 검진센터의 수입증가 등으로 2020년 당기순이익 67,676,693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며 수고하시는 조합원 및 경영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조속히 긴급재난사태가 극복되어지길 기원드립니다.

사업감사 조 세 종



회계감사 배 남 억





## 제2호 의안 2020년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승인의 건

- 의결주문: 2020년도 탈퇴 조합원 98명의 출자금 19,420,841원 환급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 관계조항: 정관 제16조 제1항, 제33조 제9호, 제35조 제4호

※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 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 승인이 있을 경우 탈퇴 또는 제명 당시 먼저 지급한 후 총회에서 승인한다.

※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9.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 제35조(합병·분할 및 해산 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 1. 2020년도 탈퇴 신청 조합원 현황

## 1-1 탈퇴조합원 명단 및 환급출자금

(단위 : 원)

가■순	50,000	배■실	50,000	이■분	105,000
강■정	65,696	배■임	50,000	이■자	58,000
고■환	50,000	백■수	50,000	이■하	50,000
고■숙	50,000	백■숙	50,000	이■범	130,000
곽■숙	50,000	변■욱	90,000	이■운	50,000
권■운	50,000	서■희	50,000	이■자	50,000
김■흠	100,000	서■	750,000	이■	750,000
김■영	50,000	서■주	50,000	이■건	50,000
김■자	50,000	손■수	60,000	이■훈	50,000
김■숙	63,500	송■예	50,000	이■성	50,000
김■영	50,000	송■화	50,000	이■숙	50,000
김■경	50,000	신■자	1,502,500	임■택	50,000
김■수	119,600	신■숙	50,000	임■숙	80,000
김■주	100,000	신■순	65,000	임■진	50,000
김■자	50,000	신■경	1,020,000	임■국	805,000
김■란	650,000	심■경	50,000	전■현	50,000
김■미	50,000	안■정	85,000	정■화	50,000
김■영	1,160,000	안■정	55,000	정■훈	50,000
김■숙	110,000	양■실	50,000	정■희	50,000
김■섭	92,000	양■미	50,000	정■철	65,000
김■영	50,000	여■선	50,000	조■주	53,500
김■희	50,000	염■원	3,450,000	조■희	50,000
김■성	50,000	오■숙	50,000	진■화	2,391,045
김■석	50,000	유■란	59,000	차■숙	150,000
문■태	1,000,000	육■라	55,000	최■자	95,000
박■순	50,000	윤■애	50,000	최■정	50,000
박■경	50,000	윤■록	50,000	최■은	50,000
박■자	50,000	윤■원	233,500	하■하	100,000
박■미	50,000	윤■진	50,000	허■익	75,000
박■천	55,000	이■병	1,150,000	홍■분	50,000
박■주	187,500	이■영	50,000	홍■의	50,000
박■복	50,000	이■선	50,000	황■경	50,000
박■주	50,000	이■호	735,000		
<b>합 계</b>					<b>19,420,841</b>

## 제3호 의안 2020년 사업예산 변경 사후 승인의 건

- 의결주문: 2020년에 이사회 승인을 득한 변경된 사업예산을 승인해 주십시오.
- 관계조항: 정관 제63조 제3항

※ 제63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2020년 사업예산 전용/변경 이사회 승인 내역

### 1. 요약

- 2020년도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자산)예산을 적시된 사유로 일부 변경하여 집행하였고,
- 이사회 승인 후 정관 제63조 제3항에 따라 자산 취득 변경 건을 총회에 사후 승인 요청함.

### 2. 총회 승인 예산 변경 현황

구분	최초 승인 예산	원안 집행	미수립 예산 집행(전용)	미집행	계
건수	12	9	5	3	17
금액 (원)	180,500,000	26,677,800	22,224,000	-	48,901,800

### 3. 예산 변경 세부내역

구분	기관	품 명	'20 수립 예산 (단위: 원)	취득일	집행결과 (단위: 원)	이사회 승인일	사유
의료 기 기	의원	자동혈압계	1,500,000	'20.02.27	1,304,850	'20.03.26	원안집행
	검진	엑스레이 장비	-	'20.08.04	17,000,000	'20.06.25	노후장비 교체
		내시경 장비	50,000,000	-	-	-	'21년 이월 미집행
		원심분리기	2,000,000	'20.08.21	440,000	'20.08.27	원안집행
	치과	구강카메라	2,000,000	'20.04.30	980,000	'20.08.27	원안집행
	의료기기 소계		55,500,000		19,724,850		
비 품	의원	스마트체온계	-	'20.10.26	1,400,000	'20.09.24	코로나-19 대응
		에어컨	3,000,000	'20.06.05	2,695,000	'20.05.28	원안집행
	치과	차트용 태블릿PC	-	'20.07.23	899,000	'20.07.30	노후장비 교체
	사무처	사무용 책,결상	6,000,000	'20.02.28	5,675,000	'20.03.26	원안집행
	비품 소계		9,000,000		10,669,000		

구분	기관	품명	'20 수립 예산 (단위: 원)	취득일	집행결과 (단위: 원)	이사회 승인일	사유
시설장치	의원/검진	간판교체	-	'20.10.27	1,000,000	'20.10.29	추가 설치
	검진	공간 확장 리모델링	100,000,000		-	-	'21년 이월 미집행
	한의원	간판교체	2,000,000	'20.10.31	1,800,000	'20.10.29	원안집행
	치과	간판교체	4,000,000	'20.10.31	4,000,000	'20.10.29	원안집행
	사무처	지하인테리어	3,000,000	'20.02.28	474,000	'20.03.26	원안집행
				'20.02.28	660,000		
				'20.03.24	1,841,950		
		에어컨		'20.06.05	1,925,000	'20.05.28	노후장비 교체
시설장치 소계		109,000,000		11,700,950			
소프트웨어	사무처	홈페이지 개발(앱)	5,000,000	'20.08.27	2,520,000	'20.04.23	원안집행
				'20.12.03	4,287,000		
		POS개발 및 유지비용	2,000,000	-	-	-	미집행
	소프트웨어 소계		7,000,000		6,807,000		
총계			180,500,000		48,901,800		



## 제4호 의안 2020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 사업보고는 요약본으로, 결산(안)은 정관 명시의 중요내용으로 실습니다.

- 의결주문: 2020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 관계조항: 정관 제33조 제5호

※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 2020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1. 총 평

2. 2020년도 활동 보고 (요약본)

3. 2020년도 결산(안) (정관 명시 중요내용 수록)



# 1. 총 평

## 1-1 사업 총평

지난 2020년도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사회변화를 맞았다. 민들레 역시 조합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한 해를 마무리하였는데, 2020년의 사업수행은 전반적으로 미진하였으나, 일부에서는 괄목상대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하였다.

조합원의 직접 참여와 조합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하는 조합활동이 상당수 비대면 활동으로 전환되었고, 이같은 한계를 극복할 대안을 명확히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세부 대책 수립이 2021년도로 과제로 넘어왔다고 판단된다.

한편으로는 ‘지역사회의료센터’를 과감히 설립하여 직제에 편재하고,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체계화하여 수익모델도 창출해내었다.

지난 2020년도는 2019년도의 사업을 계승하였는데, 보다 구체화한 “민들레형 동네돌봄을 만드는 해”로 기조를 정하여 ①조합원을 민들레형 동네돌봄 주체로 만들기(지역주민을 조합원으로) ②건강반에 기반한 동네돌봄 사회적경제 만들기(돌봄 협동조합 창업과 지역화폐의 활성화) ③민들레 사회적경제 돌봄 클러스터 만들기 등으로 세부 과제를 수립하였다.

이를 수행한 실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합원을 민들레형 동네돌봄 주체로 만들기’는, 조직 활동 강화를 위하여 조직국을 직제로 편재하여 연속성과 중심 틀을 세우고 건강반 운영에 예산을 편성하였다. 주민 및 조합원 주도의 건강반 활동을 전개하여 조합원과 스스로조합비 조합원 확충에 크게 기여하였다.

둘째, ‘건강반에 기반한 동네돌봄 사회적경제 만들기’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고용노동부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동네돌봄의 3가지 축인 건강리더쿵, 조인케어매니저쿵, 서로돌봄쿵 인큐베이팅을 해내었다. 다만, 이 3개의 협동조합이 독립적 사업체로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모델로의 확립 여부는 미지수이다.

셋째, ‘민들레 사회적경제 돌봄 클러스터 만들기’는 각 운영 주체들과의 전략을 수립하였으나, 대덕구 도시재생사업과의 결합이 불발되었고, 전체영역을 우리 조합이 감당하여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민들레 돌봄 클러스터는 꼭 이루어야 할 과제이기에, 2021년도에도 민관 협치 및 다른 민간 영역의 주체들과의 협력을 도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1-2 코로나-19에 따른 활동 변화

직제에 조직팀을 조직국으로 격상시켜 전례없는 파격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조합원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대면활동이 주가 되어야하는 조직 활동의 특성상,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신입조합원 교육, 건강리더 교육 및 대의원 자치회 운영 등의 계획에 차질을 빚었으며,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이 과제로 대두되었다. 조직국 뿐아니라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등 대면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기관들의 활동에도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에 줌 화상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완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의료기관이 당면한 코로나19확산과 방역은 큰 과제였다. 조합의 전 직원과 조합원 자원봉사자들이 일차의료기관 이용환자 발열 체크 지원에 나섰고, 간이 진료소를 운영하여 환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그리고 조합원의 마음과 몸의 건강 안부를 챙기는 ‘민들레 건강안부 꾸러미’는 조합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좀처럼 수그러지지 않는 코로나19 상황에 안주할 수 없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전세계적 재난 상황에서 동네돌봄은 더욱 절실히 요구받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실제적인 대안 모색이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우리조합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동네돌봄 클러스터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협치를 강화하여야 하며, 민들레형 동네돌봄 실현 노력은 차기년도에도 더욱 힘내어 이어가야 한다.

## 1-3 재정적 측면

코로나19사태에도 불구하고, 예산대비 실적을 보면, 매출의 경우 예산책정액 2,817,763,759원 대비 2,974,881,928원으로 6% 상향된 실적을 이루었고, 손익은 예산 실적액 9,866,241원 대비 67,676,693원으로 651% 상향되었다.

전년 대비 실적은, 매출의 경우 전년 동기실적 2,643,770,424원 대비 2,884,509,749원으로 109% 실적을 달성했으며, 손익은 전년 동기실적 64,278,686원 대비 66,713,956원으로 4% 초과하여 좋은 실적을 이루었다.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흑자를 이뤄낸 요인으로,

첫째, 의원과 검진센터의 적극적인 매출 발굴과 꾸준한 이용환자의 증가로 인한 기여를 들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의료센터의 활발한 활동을 통한 수익모델 창출이 크게 기여했으며,

셋째, 2020년 9월부터 새로 부임한 치과 원장의 진료 만족도 향상과 치과위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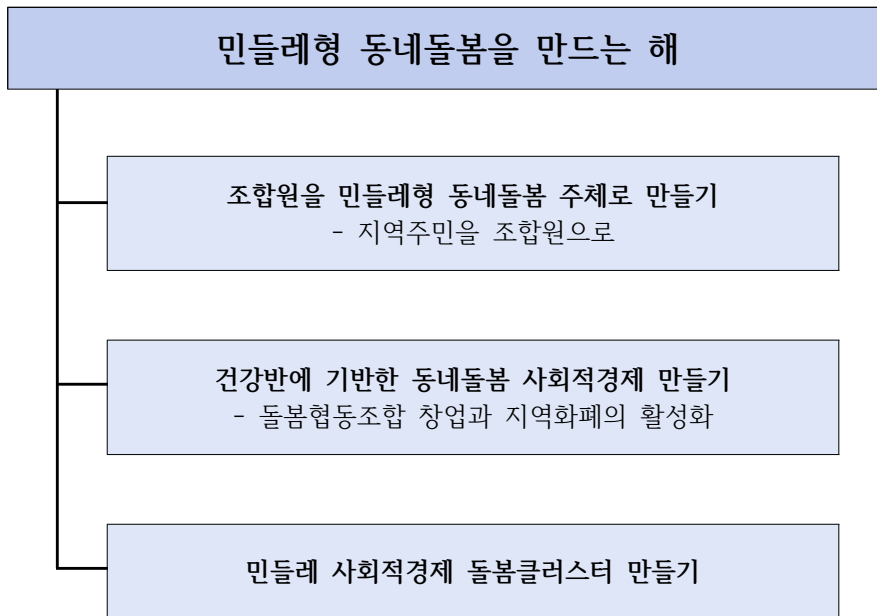
들의 헌신으로 그동안의 적자 구조를 탈피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직원 조합원들이 코로나19가 심각하던 시기에, 일정기간 무급휴직을 결의해 주었고, 원장단은 조합에 기부금을 후원하였다. 직원 조합원의 헌신과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였으며, 무엇보다도 조합원과 지역주민들이 코로나19 우려 속에서도 꾸준히 민들레 의료기관을 찾아주어 흑자의 기반을 일구어내었다고 볼 수 있다.

## 2. 2020년도 활동 보고

### 2-1. 2020년 사업 기조에 따른 실적

<2020년 사업 기조>



<2020년 사업 기조에 따른 사업 평가>

1. 조합원을 민들레형 동네돌봄 주체로 만들기				
	구분	목표	성과	세부 내역
5대 핵심지표 달성	조합원	총 조합원 4,000세대	총 조합원 4,008세대	조합원 증감계 : 309세대 증가
	출자금	증감계 1억원	총 출자금(등기) 1,147,690,000	증가 172,752,787원 감소 167,066,299원 (5,686,488원 증가)

	건강리더	신규 36명	17명	참여자 45명 수료자 17명
	건강반	30개 (반원 300명)	46개 (반원 292명)	일반 건강반 32개(219명) 만성질환 건강반 14개(73명)
	스스로조합비	400명	251명	총 조합원의 6.3% 총액 27,470,000원

평가	<p>▶조합원 체계적인 조합원 관련 업무를 위해 조직국을 분리 운영하여 적극적인 조합원 가입 활동으로 총 조합원 4,000세대 달성</p> <p>▶출자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로 고액 출자 조합원의 감자 증가를 예상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출자금의 실질적 증가는 고무적인 성과임.</p> <p>▶건강리더 건강리더 양성과정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한 가운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17명이 수료함.</p> <p>▶건강반 조합원 중심 활동, 건강반 활동비의 조합 자체 지원(스스로조합비) 전환은 보다 자율적인 건강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사업비 사용 한계를 극복하였으며, 전년 대비 조합원 비율 285% 신장됨.</p> <p>▶스스로조합비 조합원 관련 업무 재정비를 통해 스스로조합비 제도 운영이 안정화되며 꾸준한 확장을 통해 조합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코로나19 방역활동과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예방활동의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됨.</p> <p>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활동의 제한과 적극적인 조직 활동의 어려움 속에서도 조합원, 건강반, 건강리더 활동은 조합원들의 결속된 힘과 노력의 성과였으며, 민들레형 동네돌봄의 기반 마련을 위해 조합원이 참여하는 돌봄협동조합 3개소 인큐베이팅은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 안전망의 발판이 됨.</p>			
----	---	--	--	--

**2. 건강반에 기반한 동네돌봄 사회적경제 만들기**

협동조합 설립 지원	계획	돌봄서비스 사회적경제사업체 3개소 창업
	성과	<p>■ 조합원 활동의 성장</p> <p>2016년 건강리더 양성 시작 2017년 건강리더 주민참여 돌봄 활동 시작 2018년 건강반 조직·운영 활동 2019년 마을기업 설립 교육 수료 2020년 돌봄 협동조합 3개소 창업</p> <p>■ 돌봄 협동조합 인큐베이팅</p> <p>① 창업인 육성 - 커뮤니티케어 전문교육, 사회적기업가 경영교육 - 비즈니스모델 수립, 전문 멘토링 - 창업교육훈련 7일간 40시간 운영, 대의원·건강리더·건강반 등 조합원 20명 참여, 15명 수료, 3팀 선정</p> <p>② 돌봄 협동조합 창업 - 건강리더협동조합, 서로돌봄협동조합, 조인케어매니저협동조합 3개소 법인설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수행, 조직운영 지원</li> <li>- 예비사회적기업 1개소 지정</li> <li>③ 정보·정책·사업 연계</li> <li>-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민들레 건강반 운영·관리 사업 연계</li> <li>-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의 지원 연계</li> <li>■ 주요 활동</li> <li>① 건강리더협동조합: 돌봄활동가 양성, 경증치매 어르신 돌봄, 건강반 운영</li> <li>② 서로돌봄협동조합: 중간집 시범 운영</li> <li>③ 조인케어매니저협동조합: 온·오프라인 상담 운영, 온라인 플랫폼 개발</li> </ul>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노동부 사업 평가 A등급</li> <li>▶ 사회적경제 활성화 유공 대전시장 표창</li> <li>▶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li> </ul> <p>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일에 공감·실행할 수 있는 지역주민이며 조합원으로서 관련 자격 취득과 활동 경험이 있는 고용중단여성 등을 구성원으로 조직하여, 틈새 및 신규서비스를 발굴·제공하는 협동조합을 창업, 돌봄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사회 기반 모델 개발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p>
<b>3. 민들레 사회적경제 돌봄클러스터 만들기</b>		
대덕구 기반 돌봄클러스터 기반 조성	계획	돌봄상담센터, 방문의료센터, 돌봄협동조합, 주민공유공간·시설 등
	성과	<p>돌봄 협동조합 창업을 통한 틈새·신규서비스 발굴·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증진 및 자립생활 지원 영역</li> <li>돌봄활동가 양성, 건강반 운영, 경증치매 어르신 돌봄, 방문건강관리 사업</li> <li>■ 단기, 긴급 돌봄 지원 영역</li> <li>회복기 환자의 단기 돌봄·재활을 위한 중간집 운영</li> <li>■ 재가요양, 건강문제 등 복합적 상담·지원 영역</li> <li>온·오프라인 통합상담 플랫폼 단계별 구축, 재가요양센터와 협력상담</li> </ul>
민들레 돌봄상담센터	계획	케어매니지먼트를 기반으로 케어클러스터의 사업과 조직을 연계하는 플랫폼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상담창구</li> <li>- 주민 및 조합원의 건강·돌봄 종합상담, 문자발송 및 소식지 안내</li> <li>- 조합원 및 지역주민 25명 상담 및 자원연결</li> <li>- 대의원과 케어매니저 1:1 전담 돌봄상담창구</li> <li>■ 케어매니지먼트 운영</li> <li>- 왕진시 케어매니저 동행, 64명 사례 진행 / 종결 11명</li> <li>■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관절염) 건강반 운영</li> <li>- 14개 건강반, 72명 참여</li> <li>- 케어매니저상담 ▶ 건강검진 ▶ 의사 및 건강운동관리사 처방 ▶ 건강반 활동 ▶ 평가</li> <li>■ 자원조사: 공간, 서비스, 제도 등 매월 업데이트</li> <li>■ 건강리더 육성 ▶ 건강리더클럽 인큐베이팅</li> <li>■ 조각은행: 사용처 확대, 지급기준 확대</li> </ul>

	계획	대덕구동네돌봄 구축에 필요한 지역돌봄네트워크 협력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덕암동 보니파시오 요양병원 지하공간 활용: 건강반 운영</li> <li>■ 케어매니저 양성 심화과정: 대전대학교 링크+사업단</li> <li>■ 돌봄서비스 확충</li> <li>- 대덕구에 제안하여 경증치매 어르신 돌봄서비스 시행</li> <li>- 법1동 지사협에 제안하여 긴급반찬서비스 시행</li> </ul>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활성화 유공 보건복지부장관 표창</li> <li>▶ 케어매니지먼트를 통한 돌봄서비스 지원, 경증치매어르신 건강관리, 만성질환 관리 등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건강자치력 향상을 위해 사업을 전개, 지역사회 건강증진 협력체계와 대덕구 동네돌봄 추진체계를 구축하는데 역할과 기능을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서비스가 중단되었을 때 비대면 화상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낙상 예방 운동과 우울예방을 위한 건강반 활동을 지속하였다.</li> <li>▶ 대의원과 조합원들의 건강을 위한 돌봄상담창구 운영, 케어매니저와 대의원 1:1 매칭, 치매예방을 위한 '오늘도 공부'잡지 발행 사업 등 다양한 조합활동도 함께 진행하여 주민에 의한 동네돌봄이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li> </ul>

2-2. 2020년 사업계획에 따른 실적

세부 사업명		수행 부서
민들레 기초조직 강화 사업		조직국
<p>□ 목적: 민들레의료사협 대의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조합원과 소통·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지역사회 연대와 사업 확장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자치력을 향상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동네돌봄의 지속적인 기반을 마련한다.</p> <p>□ 목표: 1) 대의원 자치운영체계 구성 및 활동 기반 구축 2) 동네돌봄 사회적경제조직 3개소 이상 설립 3) 지역사회 주민조직 및 단체와 연대 활동</p>		
구분	계획	성과
조합원	신입조합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합 교육의 어려움으로 소규모 및 개별 교육 강화</li> <li>· 카톡채널 가입 유도로 온라인 소식 안내 확대</li> </ul>
대의원	대의원 활동·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민들레의 태동과 사업 방향, 살림에 대한 이해도 상승으로 대의원의 역할 강화</li> <li>· 단합대회: 처음 대의원 단합회 실시로 대의원의 화합과 의욕 고취</li> <li>· 자치회: 회장, 총무, '민'모임으로 체계화. 건강반 모니터링 시행</li> </ul>
건강반	30개, 300명 조직·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의원, 조합원 중심의 건강반 총 46개, 292명 조직</li> <li>· 일반 건강반 32개, 219명(조합원 168명)</li> <li>· 만성질환 건강반 14개, 73명(조합원 32명)</li> <li>· 일반 건강반 1회 이상 촉진 활동, 건강반 활동비 98% 집행</li> </ul>
건강리더	30명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5명이 양성과정에 참여하였으나 코로나19 지역 확산으로 중단 및 재개하여 미이수자 다수 발생, 17명 수료</li> <li>· 건강리더 활동이 돌봄활동으로 확대되며 건강리더클럽 인큐베이팅</li> </ul>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 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대응 공동체 마을계획 세우기', 법1동 지사협과 연합하여 활동</li> </ul>

	활동	주도, 대덕구청장 표창 수상 · 어르신 조합원들의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활력에 기여
주민자치	주민자치회 활동	· 주민자치회 홍보, 교육 이수, 자치위원으로 조합원 다수 참여 · 송촌동 주민자치회 실행 로드맵 설계 팀러닝 참여 · 조합원과 직원들의 대덕구 관내 주민자치회 활동 활발

□ 평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적극적인 조직 활동의 어려움 속에서도 1) 핵심 5대지표 중 조합원 4,000세대 달성, 2) 대의원 자치운영체계 마련, 건강반 조직·운영, 건강리더 양성 등 조합원 활동 강화, 3) 돌봄협동조합 3개소 창업을 지원하여 돌봄서비스 발굴과 마을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와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 안전망 구축의 민들레형 동네돌봄 기반을 마련하였다.  
 기초조직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원 관련 업무를 재정비하여 적극적인 신입 조합원 가입, 스스로 조합비 조합원 이탈을 예방한 관리체계로 안정적인 조합원 관리를 이루었고, 대의원자치회를 구성하여 일상적으로 소통하며 대의원의 활동력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건강반 조직·운영을 조합원 중심, 조합 자체 지원(스스로조합비)으로 전환하여 그간의 프로젝트 사업으로 구성·운영되는 비조합원 중심, 지원사업비 사용의 한계를 극복하여, 자율적인 건강반 활동과 전년도 대비 건강반 조합원 비율이 285% 신장되었으며, 조합과의 결속력과 지역주민의 건강자치력 향상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또한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에서 조합원 및 지역주민과 함께 진행한 수제 마스크 제작·배포, ‘이웃안부 꾸러미’활동은 돌봄의 부재 시 동네돌봄의 중요성과 나눔이 인식된 소중한 실천이었으며,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의 기획공모 ‘재난대응 공동체 돌봄 마을계획 세우기’사업, 좋은마을만들기 사업을 연계하여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공동체 활동을 펼쳐나갔다.

세부 사업명	수행 부서
민들레 돌봄상담창구 운영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 목적: 조합원 및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봄과 보건의료, 요양, 주거 등의 서비스와 자원을 연결하고 케어매니지먼트를 지원하여 민들레형 동네돌봄을 실현하고자 함  
 □ 목표: 1) 건강문제 및 돌봄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조합원 및 지역주민 의뢰  
 2) 케어매니저 전화상담 혹은 방문상담 후, 케어플랜 수립, 서비스 연결

계획	성과
돌봄상담창구 운영	· 돌봄상담창구 소개 문자 발송, 소식지에 홍보 · 상담 진행, 정보제공 34사례 진행, 조합원 9명 참여 · 대의원과 케어매니저 1:1로 전담 매칭하여 상담 진행 · ‘오늘도 공부’ 잡지를 무료로 매주 1회 가정으로 발송

□ 평가  
 조합원 및 지역주민을 케어매니저가 방문, 상담하고 서비스와 자원을 연결하여 건강 및 돌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발판을 마련함.

세부 사업명	수행 부서
동네돌봄의 구체화를 위한 건강리더 활동 지원사업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 목적: 돌봄이 필요한 조합원 및 지역주민을 건강리더가 방문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활동과 맞춤형 건강증진활동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보다 건강한 삶을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목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방문하여 안부, 말벗, 외출 및 병원동행 등의 일상생활지원 활동과 IT를 활용하여 낙상과 치매를 예방하는 건강증진활동

계획	성과
건강리더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르신 7명, 총 33회의 돌봄활동 제공</li> <li>· 건강리더 방문이 어려울 경우 케어매니저가 전화상담 및 긴급시 방문하여 건강관리 및 돌봄자원 연계</li> <li>· 돌봄활동에 공백이 없도록 건강리더를 발굴하여 연결</li> </ul>

□ 평가  
 코로나19로 인해 방문활동이 전면 중단되어 건강리더 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었으며, 돌봄활동을 건강리더 쿵으로 연계하려 했으나 사업 준비단계로 수행의 어려움이 있어 기존 건강리더 활동으로 진행함.

세부 사업명	수행 부서
민들레 건강화폐 '조각' 운영	사무처 조직국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지역사회의료센터

□ 목적: 건강화폐 '조각'을 활용하여 건강자치력 향상 및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돌봄, 건강리더 활동 참여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함  
 □ 목표: 민들레의료사협의 건강증진활동, 질병예방활동, 돌봄활동, 교육활동시 지급

계획	성과
5,000,000조각 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2,606,500조각 발행, 통장 158개 발급, 전체 집행률 61%</li> <li>· 사무처 조직국 779,000조각, 통장 65개(집행률 87%)</li> <li>·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1,487,500조각, 통장 72개(집행률 65%)</li> <li>· 지역사회의료센터 340,000조각, 통장 21개 (집행률 31%)</li> </ul>

□ 평가  
 대면 활동의 비중이 큰 단위 사업의 특성상 코로나19 상황으로 조각 발급의 제한이 많았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조각은 건강반 활동, 건강 목표 달성, 교육 참가, 돌봄활동 진행 등 다양한 과정에 발급되어 동기부여, 활동 촉진 등 건강화폐로 자리 잡고 있으며 향후 발전성이 기대된다.

세부 사업	수행 부서
일차의료센터 운영	의원, 검진센터, 한의원, 치과

**의원**

□ 목적: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  
 □ 목표: 지역사회의료센터를 활성화해서 지역주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장애인주치의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왕진사업)

구분	계획	성과
비용감소	재고관리, 일회용품 줄이기	코로나로 일회용품 사용 증가
의료기기관리	산소포화도, 자동혈압기	산소포화도 기계 구입되지 않음



의료서비스질개선	만성질환자 관리 공기청정기 설치	대기시 만성질환영상 시청하고 진료시 교육 진행
예방진료관리	만성질환관리 환자 확대	진료시 상담하여 신규 참여자 확보
조합원관리	조합원들과 친밀한 교류 가족관계 파악 및 기록	자주보는 조합원에게만 친밀함 독감백신을 추가 구입하여 조합원에게 알림

□ 평가

코로나로 인해 매출 감소를 예상했으나 지역사회의료센터와 협업으로 매출 증가.  
순환보직으로 과도기가 있었으나 현재는 업무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다른 사업소에 대한 안내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  
코로나로 인한 잦은 환기로 환자들의 불편사항이 있어 환기 시간에 대한 안내가 필요함.

**검진센터**

- 목적: 건강을 건강할 때 지켜주는 파수꾼!!!
- 목표: 주민들이 건강검진을 하고자 할 때, 민들레를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도록 만들기

구분	계획	성과
비용감소	원격판독 비전속 인건비 절감 일회용·전기로 줄이기	코로나로 일회용품 사용 증가 허원장님 수료증 취득으로 수수료 절감
의료기기관리	원심분리기, 내시경 세척기, 산소포화도 구입	원심분리기 교체, 산소포화도 구입
의료서비스질개선	직원 칭찬스티커 제작	준비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함
예방진료관리	대장내시경·초음파검사 홍보	토요일에도 대장내시경을 진행하여 검사자 상승
조합원관리	단골 조합원 확보	단골 조합원에게 한방소화제 증정을 계획하였으나 한의원 진료 후 처방이 필요해 진행하지 못함

□ 평가

상반기 코로나 영향으로 검진자 감소 추세였으나 토요일 대장내시경 진행, 평일 대장내시경을 추가 진행하였으며, 하반기 검진자가 점차 증가하여 매출 목표를 달성함.  
순환보직과 신규직원 입사로 어려움도 있었으나 직원 모두의 노력과 화합으로 안정되고 타사업소 지원도 가능한 유기적인 관계로 변화함.

**한의원**

- 목적: 정성을 다하는 민들레한의원
- 목표: 수작업으로 장인정신을 담아 비보험 상품제작, 내원하신 환자 만족도 상승

구분	계획	성과
비용감소	에너지 절약	매일 2회 환기로 실내공기정화, 적정 온도 유지
의료기기관리	수치료기 수리 대기실 오디오기기 교체	수치료기는 모터 수리 후 다른 문제 발생으로 미사용 오디오기기는 한의원 이전 후 설치 예정
의료서비스질개선	밝은 이미지로 맞이하기	마스크로 인해 표정이 보이지 않아 밝은 목소리로 인사

예방진료관리	만성질환관리	만성질환 체크, 진료 기록 및 관리
조합원관리	치료 효과 여부 및 불편사항을 묻고 기록하기	약환 복용 후 불편시 꼭 연락주시도록 안내하여 많은 환자가 상담을 하시며, 재처방도 진행
<p>□ 평가          코로나19와 직원 감축에도 공진단 판매 소폭(1.6%) 상승          경제악화로 약환과 침환이 줄어 매출 11%정도 감소          직원, 임원, 조합원들이 많이 애써주셔서 여러 우려 속에서도 선전함.</p>		
<b>치과</b>		
<p>□ 목적: 정성을 다하는 민들레한의원          □ 목표: 수작업으로 장인정신을 담아 비보험 상품제작, 내원하신 환자 만족도 상승</p>		
구분	계획	성과
비용감소	재고 관리	사용량 파악하고 신중히 구매
의료기기관리	구강 카메라, 컴퓨터 교체	구강 카메라 구입 완료
의료서비스질개선	밝은 이미지로 맞이하기	전직원이 인사하며 최선을 다함
예방진료관리	스켈링, 정기검진	매월 80건 이상 스켈링 진행
조합원관리	예약문자, 리콜문자 안내	정기적인 안내 문자 발송
<p>□ 평가: 적극적인 예방진료와 걱정진료를 이행하고 치료에 최선을 다하여 직원 감축, 원장님 교체 의 큰 변화 속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목표를 달성함.</p>		
<b>세부 사업</b>		<b>수행부서</b>
<b>방문의료서비스 제공</b>		<b>지역사회의료센터</b>
<p>□ 목적: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건강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하고 신뢰받는 방문기반 의료시스템 만들기          □ 목표: 1) 우리나라에서 모범이 되는 지역사회의료 체계와 사례를 만든다.          2) 서로 소통하며 성장하는 팀워크 만들고          3) 지역사회의 건강자원들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연대하며          4) 올해 활동을 책, 논문 등 기록물로 남긴다.</p>		
구분	계획	성과
보건의료서비스	기존 가정간호서비스에 더해 왕진,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제도화 되지 않은 방문작업치료 및 치과위생 등의 서비스 연계, 팀 접근 방식 방문의료서비스의 가능성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왕진, 가정간호, 방문작업치료, 방문치과위생의 다학제적 접근 기틀 마련</li> <li>· 사의련학술대회 사례발표</li> <li>· 씨앗기금 통합돌봄서비스 사례발표</li> <li>· 대덕구 '건강을 부탁해' 방문의료서비스 제공 21명</li> </ul>

		가정간호사 2명을 총원하여 가정 및 시설 거주자 대상의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방문의료서비스 내실화함
	스스로 발 관리가 어려운 분의 발 건강 확인·관리	의사, 간호사, 작업치료사가 팀으로 관리, 30명 이상 서비스 제공
건강증진 및 보건예방활동	지역사회 자원과 협력하여 주민을 위한 건강검진, 예방접종, 금연금주, 생활체육의 기회 제공	· 법동 중리동 행복상담소 년 2회 · 대전장애인체육회 온·오프라인 건강반 활동 주 1~2회 · 체력인증 30명 진행 · 대전세종금연지원센터 연계
지역사회 협력	지역사회 장애인 관련 기관 및 시설을 발굴하여 연계·협력	정신장애인 그룹홈 2곳, 요양원 10곳 이상과 협약하여 건강서비스 연계 제공

□ 평가  
지역사회의료센터가 발족한 첫해로, 코로나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성원 각자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고 팀워크로 일하면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함.  
특히 가정전문간호사를 2명 추가 채용하여 이용자 및 시설의 수가 급증, 왕진시범사업, 의료사협연합회 방문의료시범사업, 대덕구 방문의료 모델링사업에 도전하여 성과 달성.  
의원, 검진, 치과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 시행착오를 통해 기틀을 만들며 적응하는 단계로, 독립된 센터로 성장하고 지속적인 활동과 성과를 위해 업무의 체계화가 필요함.  
▶ 대덕구 방문의료시범사업 유공 대덕구청장 표창  
▶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세부 사업	수행부서
케어매니지먼트 체계 구축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 목적: 사람 중심, 주민의 참여로 완성하는 동네돌봄  
□ 목표: 주민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삶의 질을 최대한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동네돌봄체계 구축 및 비즈니스모델 마련

구분	계획	성과
건강증진활동	사례 건강반 운영과 지역 확대	· 만성질환 건강반 14개 조직 운영 · 덕암동 만성질환 건강반 1개 조직 운영 · 보니파시오 요양병원 지하공간을 건강반 활동 및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 예정
	지역돌봄네트워크와 서비스 확충	· 사례회의, 동네돌봄회의, 지역케어회의 참석·운영 · 경증치매어르신 돌봄사업을 대덕구에 제안하여 운영 · 긴급반찬지원서비스 사업을 법1동 지사협에 제안하여 운영

케어매니지먼트 운영	상담관리 모델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원 및 주민의 돌봄상담창구 운영</li> <li>· 정보제공사례 34사례 진행</li> <li>· 케어매니지먼트 69사례 진행</li> <li>· 케어매니지먼트 교육,주민자치교육 참석</li> <li>· 서비스품질관리 진행</li> </ul>
	건강리더 육성사업	‘경증치매어르신돌봄서비스’를 통해 건강리더 역할 확대, 낙상예방활동에서 치매 예방활동으로 확대
신규사업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	(R&D) 주민참여 건강증진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케어 지원 ICT솔루션 개발 진행 (비R&D) 지역공동체기반의 커뮤니티케어와 지역화폐 플랫폼 연계를 통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진행
	생활중심형 고령자 커뮤니티케어 통합 운영 솔루션 개발	고령자 건강요구진단시스템에 필요한 간단테스트 알고리즘 분석 및 요약보고 작성 완료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육성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건강관리서비스 16명 진행, 건강리더 3명 연계</li> <li>· 안부확인, 복약관리, 낙상예방운동, 인지강화활동 프로그램 운영</li> </ul>

□ 평가

국가 및 지자체 사업을 총6개 수행하며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예산이 총 369,110천원으로 참선 전 직원의 인건비와 지역사회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건강증진커뮤니티 ICT솔루션 개발, 사회적경제 활성화, 케어매니지먼트를 통한 돌봄서비스 지원, 경증치매어르신 건강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건강자치력 향상을 위해 사용하였음.

또한 대덕구 동네돌봄 추진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돌봄 사각지대의 빈틈을 메우고, 만성질환 관리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케어매니저가 역할하였고,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서비스가 중단되었을 때도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화상(ZOOM)을 활용하는 스마트폰 교육과 포용적 디지털 이용 환경을 조성해 안전한 낙상예방 운동과 우울예방을 위한 비대면 건강반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음.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역주민에게 민들레조합원으로서 함께 건강을 지키며 동네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들레를 소개하여 총 32명의 조합원가입과 6명의 스스로조합비 신청을 받았으며 대의원과 조합원들의 건강을 위한 돌봄상담창구 운영, 케어매니저와 대의원 1:1매칭, 치매예방을 위한 ‘오늘도 공부’잡지 발행 사업 등 다양한 조합활동도 함께 진행하였음.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활성화 유공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3. 2020년도 결산(안)

#### 3-1. 결산 총평

2020년도의 결산 손익은 67,676,693원의 흑자로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였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별도 비용 증가(약 1,500만원)와 둔산 사업소 사업종료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약 3,000만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흑자 달성을 이룬 것은 민들레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꾸준한 민들레 의료기관 이용,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 경영진의 적절한 경영 판단 등이 모인 성과라 보이며, 이는 민들레가 추구하는 ‘협동’을 실천한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지역사회의료센터가 정착하여 매출 신장에 기여하였으며, 9월부터 치과 원장 교체에 따른 경영 성과도 크게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무엇보다 의원과 검진센터가 꾸준히 이루어낸 매출 증대를 통하여 전반적인 흑자구조를 이끌었음은 자명하다고 분석된다. 그러나 한의원이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 변화 적응과 경영의 정상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안타깝다.

전반적인 재무적 성과로 보여지는 지표인 2020년 결손금(누적적자)이 7억9천만원으로 개선되었으며,

부채 또한 2019년 1,895,957,139원에서 2020년 1,675,244,539원으로 약 2억2천만원의 개선 효과와 더불어, 이에 따른 이자 비용도 2019년 56,497,946원에서 2020년도 46,316,665원으로 약 1천만 원이 개선되었다.

또한 예산대비 초과비용 지출이 많아졌으나, 이는 매출 증가에 따른 동반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건전한 초과지출로 볼 수 있다.

자본금으로 계산되는 출자금이 2019년 1,146,439,922원이나, 2020년 1,147,690,000원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출자금은 단순 자본금을 넘어 자금을 활용하여 신사업을 추진하는 원동력이며, 금융비용 및 이자비용 등을 절감시키기 위한 협동조합의 중요한 덕목이다. 협동조합 이념에 따라 필수적인 출자금 증대는 건실하고 지속가능한 민들레를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기때 출자와 증자가 늘어나는 2021년을 기대해본다.

### 3-2. 주요 결산실적

#### 1) 예산 대비 부서별 매출 / 손익 실적

구분	2020년도 실적		2020년도 예산		실적율(%)	
	매출	손익	매출	손익	매출	손익
<b>누계</b>	<b>2,891,153,709</b>	<b>67,676,693</b>	<b>2,677,400,000</b>	<b>9,866,241</b>	<b>108</b>	<b>686</b>
의원/검진	1,826,450,260	460,426,706	1,812,000,000	527,993,121	101	87
한의원	233,792,540	-35,293,130	248,000,000	-15,692,427	94	225
치과	496,478,195	47,212,709	432,000,000	11,728,230	115	403
지센	298,034,530	84,684,452	150,000,000	-32,552,333	199	-260
참센	30,780,000	-17,326,657	27,000,000	-24,517,336	114	71
사무처	5,618,184	-472,027,387	8,400,000	-457,093,014	67	103

#### 2) 2020년 예산 대비 수지 계산서

구분	2020년 예산	2020년 결산	예산 대비 비율(%)	총액 대비 비율(%)	
<b>수입총계</b>	<b>2,827,630,000</b>	<b>3,040,655,877</b>	<b>107.53</b>	<b>100.00</b>	
사업수익	의료기관수입	2,642,000,000	2,854,755,525	108.05	93.89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27,000,000	30,780,000	114.00	1.01
	사무처	8,400,000	5,618,184	66.88	0.18
사업외수입	정부지원 및 보조금	123,900,000	131,316,222	105.99	4.32
	기타	26,330,000	18,185,946	69.07	0.60
<b>지출총계</b>	<b>2,817,763,759</b>	<b>2,972,979,184</b>	<b>105.51</b>	<b>100.00</b>	
사업비	78,079,100	54,440,571	69.72	1.83	
판관비	2,691,684,659	2,868,518,712	106.57	96.49	
사업외비용	48,000,000	50,019,901	104.21	1.68	
<b>수지합계</b>	<b>9,866,241</b>	<b>67,676,693</b>	<b>685.94</b>		

### 3-3 자본결산

#### 1) 자산운용 계획과 집행현황

구분	기관	품명	'20 수립 예산 (단위: 원)	집행결과 (단위: 원)	사유	
의료기기	의원	자동혈압계	1,500,000	1,304,850	원안집행	
	검진	엑스레이 장비	-	17,000,000	노후장비 교체	
		내시경 장비	50,000,000		'21년 이월 미집행	
		원심분리기	2,000,000	440,000	원안집행	
	치과	구강카메라	2,000,000	980,000	원안집행	
	의료기기 소계		55,500,000	19,724,850		
비품	의원	스마트체온계	-	1,400,000	코로나-19 대응	
		에어컨	3,000,000	2,695,000	원안집행	
	치과	차트용 태블릿PC		899,000	노후장비 교체	
	사무처	사무용 책,결상	6,000,000	5,675,000	원안집행	
	비품 소계		9,000,000	10,669,000		
시설장치	의원/검진	간판교체	-	1,000,000	추가 설치	
	검진	공간 확장 리모델링	100,000,000	-	'21년 이월 미집행	
	한의원	간판교체	2,000,000	1,800,000	원안집행	
	치과	간판교체	4,000,000	4,000,000	원안집행	
	사무처	지하인테리어			474,000	원안집행
				3,000,000	660,000	
					1,841,950	
	에어컨			1,925,000	노후장비 교체	
시설장치 소계		109,000,000	11,700,950			
소프트웨어	사무처	홈페이지 개발(앱)	5,000,000	2,520,000	원안집행	
				4,287,000		
		POS개발 및 유지비용	2,000,000		미집행	
소프트웨어 소계		7,000,000	6,807,000			
총계			180,500,000	48,901,800		

### 3-4. 수지 계산서

#### 1) 통합 수지계산서

과 목	제18(전기)		제17(전기)	
	금액		금액	
<b>I. 매출액</b>		<b>2,891,153,709</b>		<b>2,643,770,424</b>
임대료수입	5,618,184		6,945,453	
의원수입금	1,548,441,930		1,236,832,274	
한의원수입금	233,792,540		258,089,405	
치과수입금	496,478,195		563,958,072	
검진센터수입금	576,042,860		562,065,220	
조합본부수입금	30,780,000		15,880,000	
<b>II. 매출원가</b>		<b>282,679,842</b>		<b>314,189,222</b>
의약품매출원가		192,718,188		168,105,436
기초의약품재고액	13,547,714		13,030,802	
당기의약품매입액	196,793,713		168,622,348	
기말의약품재고액	17,623,239		13,547,714	
의료소모품매출원가		89,961,654		146,083,786
기초의료소모품재고액	12,090,663		40,228,974	
당기의료소모품매입액	96,365,545		117,945,475	
기말의료소모품재고액	18,494,554		12,090,663	
<b>III. 매출총이익</b>		<b>2,608,473,867</b>		<b>2,329,581,202</b>
<b>IV. 판매비와관리비</b>		<b>2,640,279,441</b>		<b>2,367,451,191</b>
임원급여			11,700,000	
직원급여	1,811,202,640		1,735,657,969	
(인건비지원금)	111,074,810		253,263,160	
퇴직급여	137,219,144		124,696,080	
복리후생비	152,268,885		114,968,144	
여비교통비	4,177,647		6,079,502	
통신비	10,416,976		10,945,132	
수도광열비	3,378,128		4,453,354	
전력비	20,156,227		24,115,424	
세금과공과금	52,231,267		47,303,519	
감가상각비	66,859,209		82,786,141	
지급임차료	53,080,000		92,010,000	
수선비	9,408,360		3,297,700	
보험료	53,794,570		52,935,437	
(보험료지원금)	9,200,830		22,965,482	
교육훈련비	4,574,475		9,728,530	
도서인쇄비	1,536,300		1,375,350	
회의비	8,955,860		9,437,585	
소모품비	22,480,590		19,941,649	
지급수수료	182,137,018		169,724,449	
건물관리비	5,424,378		7,495,791	
협회비	4,000,000		2,030,000	
무형고정자산상각	5,972,650		7,120,034	
연대활동비	16,209,800		18,182,176	



과 목	제18(전기)		제17(전기)	
	금액		금액	
조 직 활 동 비	8,828,311		959,510	
철 거 비 등	34,000,000		0	
기 금 사 업 비	227,167,632		231,144,406	
( 기 금 사 업 비 지원금 )	227,167,632		231,144,406	
홍 보 활 동 비	7,902,973		6,009,302	
인 적 용 역 비	52,345,470		26,722,420	
( 인 적 용 역 비 지원금 )	43,072,580		0	
보 건 예 방 사 업 비	7,969,152		53,996,995	
조 합 원 건 강 지 원 비	67,326,481		0	
기 부 금 사 업 비	22,715,120		35,625,400	
( 기 부 금 사 업 지원금 )	22,715,120		35,617,760	
<b>V. 영 업 손 실</b>		<b>31,305,574</b>		<b>37,869,989</b>
<b>VI. 영 업 외 수 익</b>		<b>149,502,168</b>		<b>159,639,681</b>
이 자 수 익	1,273,995		1,668,593	
정 부 지원 및 보 조 금	131,316,222		140,378,396	
유 형 자 산 처 분 이 익	0		699,000	
후 원 금	14,796,070		4,000,000	
잡 이 익	2,115,881		12,893,692	
<b>VII. 영 업 외 비 용</b>		<b>50,019,901</b>		<b>57,491,006</b>
이 자 비 용	46,316,665		56,497,946	
무 형 자 산 처 분 손 실	2,000		0	
보 상 비	705,190		0	
유 형 자 산 처 분 손 실	2,539,262		826,494	
잡 손 실	456,784		166,566	
<b>VIII. 법 인 세 차 감 전 이 익</b>		<b>67,676,693</b>		<b>64,278,686</b>
<b>IX. 법 인 세 등</b>		<b>0</b>		<b>0</b>
법 인 세 등				
<b>X. 당 기 순 이 익</b>		<b>67,676,693</b>		<b>64,278,686</b>

2) 부서별 수지계산서

[1] 의료기관

계정과목	합계	의원·검진	한의원	치과	지역사회의료센터
I . 매 출 액	2,891,153,709	1,826,450,260	233,792,540	496,478,195	298,034,530
II . 매 출 원 가	282,679,842	198,236,324	31,491,188	47,536,489	5,415,841
III . 매 출 총 이 익	2,608,473,867	1,628,213,936	202,301,352	448,941,706	292,618,689
IV . 판 매 비 와 관 리 비	2,640,279,441	1,163,375,340	238,113,482	411,917,904	211,170,558
직 원 급 여	1,811,202,640	784,481,840	151,158,820	272,530,530	171,108,850
( 인 건 비 지 원 금 )	111,074,810				
퇴 직 급 여	137,219,144	53,051,718	14,824,180	20,468,217	15,056,421
복 리 후 생 비	152,040,035	60,559,030	15,095,950	22,919,695	11,823,670
여 비 교 통 비	4,177,647	63,300	12,500		2,952,447
통 신 비	10,416,976	2,816,070	1,302,090	501,536	424,090
수 도 광 열 비	3,378,128	803,160	254,170	279,854	194,070
전 력 비	20,156,227	7,700,793	3,749,810	3,274,481	203,734
세 금 과 공 과 금	52,231,267	20,853,310	5,568,340	7,090,490	4,747,550
감 가 상 각 비	66,859,209	42,660,743	790,499	1,710,358	
지 급 임 차 료	53,080,000		23,636,000	13,200,000	
수 선 비	9,408,360	2,168,460	97,300		
보 험 료	53,794,570	13,633,800	3,491,720	5,371,030	2,809,870
( 보 험 료 지 원 금 )	9,200,830				
교 육 훈 련 비	4,574,475	524,875	130,000	480,000	414,000
도 서 인 쇄 비	1,536,300	44,000	216,000	331,500	110,000
회 의 비	8,955,860	1,260,150	383,060	498,880	546,893

계정과목	합계	의원·검진	한의원	치과	지역사회의료센터
소모품비	22,480,590	9,658,960	1,219,460	1,660,910	296,860
지급수수료	182,137,018	108,289,895	4,067,733	49,174,498	197,103
건물관리비	5,424,378		1,369,000	1,304,230	
협회비	4,000,000		520,000		
무형고정자산상각비	5,972,650	308,000		123,200	
연대활동비	16,209,800				
조직활동비	8,828,311				
철거비	34,000,000				
기금사업비	227,167,632				
(기금사업비지원금)	227,167,632				
홍보활동비	7,902,973	220,000	91,300		
인적용역비	52,345,470	7,034,610			
(인적용역비지원금)	43,072,580				
보건예방사업비	7,969,152	622,690	95,000	332,500	285,000
조합원건강지원비	67,326,481	46,619,936	10,040,550	10,665,995	
기부금사업비	22,715,120				559,400
(기부금사업비지원금)	22,715,120				559,400
V . 영업이익	-31,805,574	464,838,596	-35,812,130	37,023,802	81,448,131
VI . 영업외수익	149,502,168	31,263	519,810	10,193,247	3,236,321
이자수익	1,273,995	31,236	12,160	22,653	3,831
정부지원및보조금	131,316,222		500,000	10,162,800	
유형자산처분이익	14,796,070				3,000,000
잡이익	2,115,881	27	7,650	7,794	232,490
VII . 영업외비용	50,019,901	4,443,153	810	4,340	
이자비용	46,316,665	1,688,801			
무형자산처분손실	2,000	1,000			
보상비	705,190	195,190			
유형자산처분손실	2,539,262	2,538,262			
잡손실	456,784	19,900	810	4,340	
VIII . 법인세차감전이익	67,676,693	460,426,706	-35,293,130	47,212,709	84,684,452
IX . 법인세					
손익	67,676,693	460,426,706	-35,293,130	47,212,709	84,684,452

[2] 사무처,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지역사회의료센터, 프로젝트사업

계정과목	사무처	주민참여 건강증진센터	2020년사업종료				
			비R&D(산자부)	R&D(산자부)	대덕구 지역사회기반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사업맞춤형 일자리사업	경증치매어르신 웰라이프 돌봄서비스
I . 매 출 액	5,618,184	30,780,000					
II . 매 출 원 가							
III . 매 출 총 이 익	5,618,184	30,780,000					
IV . 판 매 비 와 관 리 비	540,408,152	75,294,005					
직 원 급 여 ( 인 건 비 지 원 금 )	273,277,610	54,588,310	46,365,000	39,375,000		18,316,680	
퇴 직 급 여	22,869,140	3,931,338	50,228,630	41,846,180		19,000,000	
복 리 후 생 비	33,145,110	8,496,580	3,863,630	2,471,180		683,320	
여 비 교 통 비	995,900	153,500					
통 신 비	4,782,718	590,472					
수 도 광 열 비	1,607,784	239,090					
전 력 비	4,400,479	826,930					
세 금 과 공 과 금	12,746,727	1,224,850					
감 가 상 각 비	21,697,609						
지 급 임 차 료	16,244,000						
수 선 비	7,142,600						
보 험 료	15,727,570	3,559,750	5,962,985	3,237,845			
( 보 험 금 지 원 금 )			5,962,985	3,237,845			
교 육 훈 련 비	3,025,600						
도 서 인 쇄 비	724,800	110,000					
회 의 비	5,950,977	315,900					
소 모 품 비	9,644,400						
지 급 수 수 료	20,099,264	308,525					
건 물 관 리 비	2,751,148						
협 회 비	3,480,000						
무 형 고 정 자 산 상 각	5,541,450						

계정과목	사무처	주민참여 건강증진센터	2020년사업종료					
			비R&D(산자부)	R&D(산자부)	대덕구 지역사회기반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사업맞춤형 일자리사업	경증치매어르신 웰라이프 돌봄서비스	
연 대 활 동 비	16,209,800							
조 직 활 동 비	8,828,311							
철 거 비 등	34,000,000							
기 금 사 업 비			29,545,227	97,131,415	35,938,750	62,252,200	2,300,040	
( 기 금 사 업 비 지 원 금 )			29,545,227	97,131,415	35,938,750	62,252,200	2,300,040	
홍 보 활 동 비	7,591,673							
인 적 용 역 비	1,876,350	361,930	10,295,080	15,859,250	1,961,250	9,657,000	5,300,000	
( 인 적 용 역 비 지 원 금 )			10,295,080	15,859,250	1,961,250	9,657,000	5,300,000	
보 건 예 방 사 업 비	6,047,132	586,830						
조 합 원 건 강 지 원 비								
기 부 금 사 업 비	21,230,700	925,020						
( 기 부 금 사 업 비 지 원 금 )	21,230,700	925,020						
<b>V . 영 업 이 익</b>	-534,789,968	-44,514,005						
<b>VI . 영 업 외 수 익</b>	108,139,448	27,382,079						
이 자 수 익	1,193,302	10,813						
정 부 지 원 및 보 조 금	94,069,680	26,583,742						
기 부 금 수 입	11,796,070							
잡 이 익	1,080,396	787,524						
<b>VII . 영 업 외 비 용</b>	45,376,867	194,731						
이 자 비 용	44,627,864							
무 형 자 산 처 분 손 실	1,000							
보 상 비	510,000							
유 형 자 산 처 분 손 실	1,000							
잡 손 실	237,003	94,731						
<b>VIII . 법 인 세 차 감 전 이 익</b>	-472,027,387	-17,326,657						
<b>IX . 법 인 세</b>								
손 익	-472,027,387	-17,326,657						

3-5 재무상태표

1) 통합 재무상태표

과목	제18(당기)		제17(전기)	
	금액		금액	
자 산				
<b>I. 유 동 자 산</b>		<b>630,557,086</b>		<b>626,883,856</b>
(1) 당 좌 자 산		594,439,293		601,245,479
현 보 통 예 금		2,762,611		12,440,732
기 금 사 업 비 ( 차 감 )	213,151,685		250,331,680	
기 타 제 예 금	47,739,053	165,412,632	34,012,654	216,319,026
정 기 예 적 금		60,000,000		60,000,000
단 기 대 여 금		39,600,000		16,500,000
미 수 수 익 금		27,000,000		27,000,000
미 수 수 익 금		783,000		0
선 급 비 용 금		249,674,076		221,274,382
선 납 비 세 금		43,045,494		42,156,359
장 기 선 금		1,242,310		4,567,520
		302,470		376,760
		216,700		610,700
(2) 재 고 자 산		4,400,000		0
의 약 품		36,117,793		25,638,377
의 료 소 모 품		17,623,239		13,547,714
		18,494,554		12,090,663
<b>II. 비 유 동 자 산</b>		<b>1,401,123,572</b>		<b>1,561,792,631</b>
(1) 투 자 자 산		64,694,882		50,292,620
출 자 자 산		64,694,882		50,292,620
(2) 유 형 자 산		1,231,379,472		1,258,683,143
토 지		740,676,923		740,676,923
건 가 상 각 누 계 액	462,923,077		462,923,077	
의 료 기 계	58,829,803	404,093,274	47,256,727	415,666,35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402,239,150		448,269,300	
시 설 장 치	341,425,219	60,813,931	363,352,813	84,916,487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33,303,940		123,527,990	
비 품	119,445,678	13,858,262	112,588,049	10,939,941
감 가 상 각 누 계 액	70,805,350		58,211,350	
무 형 자 산	58,868,268	11,937,082	51,727,908	6,483,442
소 프 트 웨 어		16,969,218		16,136,868
(4) 기 타 비 유 동 자 산		16,969,218		16,136,868
임 차 보 증 금		88,080,000		236,680,000
기 타 보 증 금		88,000,000		235,000,000
		80,000		1,680,000
<b>자 산 총 계</b>		<b>2,031,680,658</b>		<b>2,188,676,487</b>

부	채			
I.유	동 부 채	763,154,446		882,382,154
외	상 매 입 금	17,375,975		23,001,291
미	지 급 금	66,135,925		205,423,419
예	수 금	113,490,888		61,926,960
부	가 세 예 수 금	13,635		221,818
선	수 금	0		24,407,300
단	기 차 입 금	324,443,131		450,205,323
선	수 수 익	0		2,067,252
유	동 성 장 기 부 채	237,194,892		115,128,791
II.비	유 동 부 채	991,380,093		1,013,574,985
장	기 차 입 금	911,380,093		1,013,574,985
부	채 총 계	1,670,034,539		1,895,957,139
자	본			
I.자	본 금	1,147,690,000		1,146,439,922
출	자 금	1,147,690,000		1,146,439,922
II.자	본 잉 여 금	0		0
III.자	본 조 정	0		0
IV.기	타포괄손익누계액	0		0
V.결	손 금	786,043,881		853,720,574
미	처 리 결 손 금	786,043,881		853,720,574
(	당 기 순 이 익 )			
	당기: 67,676,693원			
	전기: 64,278,686원			
자	본 총 계	361,646,119		292,719,348
부	채 및 자 본 총 계	2,031,680,658		2,188,676,487

2) 재무상태표 상세내역

미 수 금	의료기관청구분,건강보험공단청구분,카드매출미입금분,프로젝트팀미수금,원천세 예정분			
	본점	한의원	치과	합계
건강보험 (의원보험)	68,058,410			68,058,410
건강보험 (의원보호)	49,605,280			49,605,280
의원 - 검진	96,332,740			96,332,740
건강리더 협동조합	50,000			50,000
의원 촉탁의	2,944,140			2,944,140
비 R & D 미수금	769,820			769,820
건탁 미수금	1,777,600			1,777,600
카드사	3,406,693			3,406,693
건강보험 (한의원보험)		4,008,490		4,008,490
건강보험 (한의원보호)		3,187,730		3,187,730
카드사		429,600		429,600
건강보험 (치과보험)			11,495,020	11,495,020
건강보험 (치과보호)			2,338,910	2,338,910
치과 - 검진			320,650	320,650
취약계층지원			256,370	256,370
카드사			1,608,600	1,608,600
매출미수금	2,021,930			2,021,930
원천세	1,062,093			1,062,093
<b>미수금합계</b>	<b>226,028,706</b>	<b>7,625,820</b>	<b>16,019,550</b>	<b>221,274,382</b>

**미 지 급 금** 퇴직연금(13,721만원),프로젝트팀1년미만근무퇴사자퇴직금반환,2020년탈퇴출자금,카드대금등

**예 수 금** 원천세,4대보험등

**단 기 차 입 금** 조합원개인차입,신한은행마이너스대출

**장 기 차 입 금**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재단법인밴드,신용보증기금,신한은행,신협,기업은행



비 유 동 자 산		본점	한의원	치과
출 자 금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11,000,000		
	한국의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5,592,000		
	아이쿱한밭생협 자연드림	50,000		
	품앗이생활협동조합	35,000,000		
	한밭사회적협동조합	300,000		
	품앗이마을사회적협동조합	3,000,000		
	치유공간마음의숲사회적협동조합	4,000,000		
	대덕품앗이협동조합	3,000,000		
	한국사회적경제실천연구소협동조합	1,000,000		
	마주봄협동조합	500,000		
	지역화폐협동조합	1,000,000		
	하니쿱협동조합	100,000		
	새마을금고	50,620		
	신협협동조합	102,262		
토 지	대덕282-10토지	740,676,923		
건 물	대덕282-10건물	404,093,274		
의 료 기 기	의료기기등	59,433,854	1,275,326	104,751
시 설 장 치	인테리어&냉난방설치	8,456,821	3,713,616	1,687,825
비 품	간판,컴퓨터추가등	10,603,807	795,574	537,701
소 프 트 웨 어	프로그램	16,866,551	102,667	
임 차 보 증 금	계족로663번길22(2,3층 보증금 반환)	50,000,000		
	계족로663번길28(대덕치과)			35,000,000
기 타 보 증 금	대덕치과세콤설치보증금	80,000		
	치과사택 임차보증금	3,000,000		
비 유 동 자 산 합 계		1,357,906,112	5,887,183	37,330,277

3-6 예산대비 집행 계산서

관	항	목	2020년예산	2020년결산	예산대비	총액대비
수입총계			2,827,630,000	3,040,655,877	107.53%	100%
수 입	사업수익	의원. 건강검진센터	1,812,000,000	1,826,450,260	100.80%	60.07%
		한의원	248,000,000	233,792,540	94.27%	7.69%
		치과	432,000,000	496,478,195	114.93%	16.33%
		지역사회의료센터	150,000,000	298,034,530	198.69%	9.8%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27,000,000	30,780,000	114.00%	1.01%
		사무처	8,400,000	5,618,184	66.88%	0.18%
		사업수입 합계	2,677,400,000	2,891,153,709	107.98%	95.08%
	사업외수익	이자수익	1,330,000	1,273,995	95.79%	0.04%
		정부지원및보조금	123,900,000	131,316,222	105.99%	4.32%
		후원금	25,000,000	14,796,070	59.185	0.49%
		잡이익	-	2,115,881	-	0.07%
사업외수입 합계		150,230,000	149,502,168	99.52%	4.92%	
지출총계			2,817,763,759	2,739,131,419	105.51%	100%
지 출	사업비	교육훈련비	12,923,000	4,574,475	35.40%	0.15%
		회의비	11,980,000	8,955,860	74.76%	0.30%
		연대활동비	16,256,100	16,209,800	99.72%	0.55%
		조직활동비	11,800,000	8,828,311	74.82%	0.30%
		홍보활동비	15,120,000	7,902,973	52.27%	0.27%
		보건예방사업비	10,000,000	7,969,152	79.69%	0.27%
		사업비 합계	78,079,100	54,440,571	69.72%	1.83%
	판매관리비	의약품비등(재고반영)	279,000,000	282,679,842	101.32%	9.51%
		직원급여	1,606,911,200	1,700,127,830	105.80%	57.19%
		퇴직급여	120,892,785	137,219,144	113.50%	4.62%
		복리후생비	128,400,000	152,040,035	118.41%	5.11%
여비교통비		5,400,000	4,177,647	77.36%	0.14%	

	통신비	7,100,000	10,416,976	146.72%	0.35%
	수도광열비	3,980,000	3,378,128	84.88%	0.11%
	전력비	20,550,000	20,156,227	98.08%	0.68%
	세금과공과	55,750,000	52,231,267	93.69%	1.76%
	감가상각비	92,666,568	66,859,209	72.15%	2.25%
	지급임차료	56,210,000	53,080,000	94.43%	1.79%
	수선비	12,600,000	9,408,360	74.67%	0.32%
	보험료	28,450,000	44,593,740	156.74%	1.50%
	도서인쇄비	1,221,000	1,536,300	125.82%	0.05%
	소모품비	21,800,000	22,480,590	103.12%	0.76%
	지급수수료	166,310,000	182,137,018	109.52%	6.13%
	건물관리비	4,900,000	5,424,378	110.70%	0.18%
	협회비	4,480,000	4,000,000	89.29%	0.13%
	무형고정자산상각	3,763,107	5,972,650	158.72%	0.20%
	철거비	21,000,000	34,000,000	161.90%	1.14%
	인적용역비	4,600,000	9,272,890	201.58%	0.31%
	조합원건강지원비	45,700,000	67,326,481	147.32%	2.26%
	기부금사업비	33,220,000	22,715,120	68.38%	0.76%
	기부금사업비지원금	-33,220,000	-22,715,120	68.38%	-0.76%
	<b>판매관리비 합계</b>	<b>2,691,684,659</b>	<b>2,868,518,712</b>	<b>106.57%</b>	<b>96.49%</b>
사업외비용	이자비용	48,000,000	46,316,665	96.49%	1.56%
	무형자산처분손실	-	2,000		0.0001%
	보상비	-	705,190		0.02%
	유형자산처분손실	-	2,539,262		0.09%
	잡손실	-	456,784		0.02%
	<b>사업외비용 합계</b>	<b>48,000,000</b>	<b>50,019,901</b>	<b>104.21%</b>	<b>1.68%</b>
<b>연간수지 합계</b>		<b>9,866,241</b>	<b>67,676,693</b>	<b>685.94%</b>	

### 3-7 부서별 매출/손익 안분 계산서

#### 1) 안분전 전년대비 단위 부서별 매출 / 손익 실적

구분	2019년도실적		2020년도실적		실적율(%)	
	매출	손익	매출	손익	매출	손익
<b>누계</b>	<b>2,643,770,424</b>	<b>64,278,686</b>	<b>2,891,153,709</b>	<b>67,676,693</b>	<b>109%</b>	<b>105%</b>
의원/검진	1,798,897,494	489,755,996	1,826,450,260	460,426,706	102%	94%
한의원	258,089,405	-20,498,388	233,792,540	-35,293,130	91%	172%
법치	415,899,532	-1,708,627	496,478,195	47,212,709	119%	-2,763%
둔치	148,058,540	-46,911,493		84,684,452		
지센			298,034,530	-17,326,657		
참선	15,880,000	-37,321,965	30,780,000	-472,027,387	194%	46%
사무처	6,945,453	-319,036,837	5,618,184	0	81%	148%

#### 2) 안분후 전년대비 단위 부서별 매출 / 손익 실적

구분	2019년도실적		2020년도실적		실적율(%)	
	매출	손익	매출	손익	매출	손익
<b>누계</b>	<b>2,643,770,424</b>	<b>64,278,686</b>	<b>2,891,153,709</b>	<b>67,676,693</b>	<b>109%</b>	<b>105%</b>
의원/검진	1,798,897,494	489,755,996	1,826,450,260	132,012,230	102%	27%
한의원	258,089,405	-20,498,388	233,792,540	-73,217,721	91%	357%
법치	415,899,532	-1,708,627	496,478,195	-17,417,551	119%	1,019%
둔치	148,058,540	-46,911,493				
지센			298,034,530	54,217,804		
참선	15,880,000	-37,321,965	30,780,000	-27,918,070	194%	75%
사무처	6,945,453	-319,036,837	5,618,184		81%	0%

## 제5호 의안 2020년 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 의결주문: 2020년 당기 순이익 67,676,69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존의 손실금 853,720,574원에 보전하는 것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 관계조항: 정관 제25조, 제33조 제5호

**※정관 제25조(법정적립금)**

-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관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 결손금 처리 계산서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과 목	제18(당기)		제17(전기)	
	금 액		금 액	
<b>I . 미 처 리 결 손 금</b>		786,043,881		853,720,574
1. 전기이월 미처리결손금	853,720,574		915,674,131	
2.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0		0	
3. 전기오류수정이익	0		0	
4. 전기오류수정손실	0		2,325,129	
5. 중 간 배 당 금	0		0	
6. 당 기 순 이 익	67,676,693		64,278,686	
<b>II . 결 손 금 처 리 액</b>		<b>0</b>		<b>0</b>
1. 임의적립금 이입액	0		0	
2. 기타법정적립금 이입액	0		0	
3. 이익준비금 이입액	0		0	
4. 재평가적립금 이입액	0		0	
5. 자본준비금 이입액	0		0	
<b>III . 차 기 이 월 미 처 리 결 손 금</b>		<b>786,043,881</b>		<b>853,720,574</b>





## 제6호 의안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 의결주문: 정관 변경(안)을 승인해 주십시오.
- 관계조항: 정관 제33조 제1호, 제35조 제1호

※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 제35조(합병·분할 및 해산 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 정관 변경사유

- 2020년 보건복지부의 정기감사에 따른 정관 변경 권고 사항
- 상위법(협동조합기본법) 위배에 따른 변경
- 2020년 총회의결 후 보건복지부 승인유보 조항 반영

### \* 참고 사항

	정 관	규 약	규 정
의결	총회 (과반수 출석, 안건별 2/3이상 또는 1/2이상 찬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보건복지부장관) 인가	총회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이사회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내용	목적, 명칭, 조직, 운영, 사업, 조합원 등 14개 필수사항	정관 이외의 조직, 사업에 관한 사항	정관, 규약 이외의 경미한 사항
예시	표준정관(예시)	총회운영, 출자금감소, 배당, 현물출자 등	이사회 운영, 감사, 직원보수, 선거관리 등

# 정관 변경(안) 신규대조표

현행	변경(안)	비고
<p><b>제4조(사무소의 소재지)</b> ①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63번길 26(법동)에 둔다.</p> <p>② &lt;삭제, 2020. 5. 09.&gt;</p> <p>③ 의료기관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6, 1층, 2층, 3층 (법동) &lt;개정, 2020. 5. 09.&gt;</p> <p>2.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민들레한의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2, 2층(법동)</p> <p>3.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치과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8, 2층(법동)</p> <p>4. &lt;삭제, 2020. 5. 09.&gt;</p>	<p><b>제4조(사무소의 소재지)</b> ①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63번길 26(법동)에 둔다.</p> <p>② &lt;삭제, 2020. 5. 09.&gt;</p> <p>③ 의료기관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6, 1층(법동), <u>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2, 2층(법동) &lt;개정, 2020. 5. 9.&gt; &lt;개정, 2021. 2. 27&gt;</u></p> <p>2.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한의의원: <u>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6, 2층(법동) &lt;개정, 2021. 2. 27&gt;</u></p> <p>3.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치과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8, 2층(법동)</p> <p>4. &lt;삭제, 2020. 5. 09.&gt;</p>	<p>의원 공간 확장을 위한 한의원과 공간 대체 운영</p>
<p><b>제18조(출자)</b> ① 조합원은 5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고,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하며, 조합원 1인당 최저출자금은 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p>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p> <p>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p> <p>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p> <p>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p> <p>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p> <p>6.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p> <p>② 한 조합원의 최고출자금은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조합원이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일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조합원 출자금 총액이 총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p> <p>③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p> <p>④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 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p> <p>⑤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 총자산 대비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p> <p>⑥ 단체출자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p>	<p><b>제18조(출자)</b> ① 조합원은 5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고,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하며, 조합원 1인당 최저출자금은 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u>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최저출자좌 수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lt;개정, 2021. 2. 27&gt;</u></p> <p>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p> <p>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p> <p>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p> <p>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p> <p>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p> <p>6.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p> <p>② 한 조합원의 최고출자금은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조합원이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일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조합원 출자금 총액이 총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p> <p>③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p> <p>④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 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p> <p>⑤ <u>&lt;삭제, 2021. 2.27&gt;</u></p> <p>⑥ 단체출자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p> <p>⑦ <u>조합원이 추가납입(증좌)한 출자금이 1좌에 미만일 경우 그 출자금은 1좌를 충족시 까지 출자예치금으로 별도 관리하며, 출자에 지금은 출자금으로 포함치 아니한다. &lt;신설, 2021.02.27.&gt;</u></p> <p>⑧ <u>제7항에 따른 출자예치금이 1좌를 충족시에 당해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전환하여 적립한다. &lt;신설, 2021.02.27.&gt;</u></p>	<p>1. 2020년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주 의처분 조치 이행 사항 반영</p> <p>2.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반영</p>

<p><b>제28조(대의원총회)</b> ① 조합은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p> <p>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p> <p>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p> <p>④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p> <p>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p> <p>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p> <p>⑧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p>	<p><b>제28조(대의원총회)</b> ① 조합은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p> <p>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p> <p>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p> <p><b>④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 에서 110명 이하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lt;개정, 2021. 2. 27&gt;</b></p> <p>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p> <p>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p> <p>⑧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p>	<p>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협동조합 업무지침에 따름</p>
<p><b>제41조(이사회)</b>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p> <p>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p> <p>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④ <u>이사회</u>의 소집은 회의일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 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p> <p>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p>	<p><b>제41조(이사회)</b>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p> <p>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p> <p>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b>④ <u>이사회</u>의 소집은 회의일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 또는 <u>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하여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lt;개정, 2021. 2. 27&gt;</u></b></p> <p>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 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p> <p>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p>	<p>2020년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주의 처분 조치 이행 사항 및 권고사항 반영</p>
<p><b>제50조(임원의 임기)</b>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p>	<p><b>제50조(임원의 임기)</b>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 만료일은 총회에서 차기 임원 선출시 까지로 한다. &lt;개정, 2021. 2. 27&gt;</p> <p>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p>	<p>코로나19 사태등에 따른 임원 공백 상태 방지를 위함</p>
<p><b>제61조(사업의 종류)</b>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p> <p>1. 지역주민의 건강과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가. 의료시설, 요양시설, 보육시설, 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시설, 건강증진시설 나. 생활습관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다. 취약계층과 조합원 및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지원 사업 라. 질병예방 및 보건예방 교육사업 마. 지역내 의료인과 연대 및 협조사업 바. 지역통화 운동 등 협동경제를 구축하고</p>	<p><b>제61조(사업의 종류)</b>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p> <p>1. 지역주민의 건강과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가. 의료시설, 요양시설, 보육시설, 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시설, 건강증진시설 나. 생활습관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다. 취약계층과 조합원 및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지원 사업 라. 질병예방 및 보건예방 교육사업 마. 지역내 의료인과 연대 및 협조사업 바. 지역통화 운동 등 협동경제를 구축하고</p>	<p>2020년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권고 사항 반영</p>

<p>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  사. 조합원의 운동 및 생활습관개선을 위한 시설  아. 기타 자원봉사활동 사업 &lt;신설, 2020. 5. 09.&gt;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2. 조합과 관련한 연구·조사사업  3. 협동조합간 협동을 위한 사업  4.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5. 임대사업  ③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④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유형은 지역사업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또는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⑤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p>	<p>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  사. 조합원의 운동 및 생활습관개선을 위한 시설  아. 기타 자원봉사활동 사업 &lt;신설, 2020. 5. 09.&gt;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2. 조합과 관련한 연구·조사사업  3. 협동조합간 협동을 위한 사업  4.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5. 임대사업  ③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④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유형은 지역사업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한다. &lt;개정, 2021. 2. 27&gt;  ⑤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b></p> <p><b>제1조(시행일)</b>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b>제2조(1차 개정)</b> 2013년 2월 23일 일부개정  <b>제3조(2차 개정)</b> 2013년 7월 11일 일부개정  <b>제4조(3차 개정)</b> 2014년 2월 22일 일부개정 (2014. 4. 21 보건복지부장관 인가)  <b>제5조(4차 개정)</b> 2015년 2월 28일 일부개정 (2015. 4. 9 보건복지부장관 인가)  <b>제6조(5차 개정)</b> 2017년 4월 4일 제2조(목적),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제57조(사업의 종류) 일부개정  <b>제7조(6차 개정)</b> 2019년 2월 23일 제2조(목적),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제18조(출자), 제25조(대의원총회), 제29조(정기총회), 제42조(이사회 의 의사), 제44조(임원의 정수), 제27조(선거운동의 제한), 제2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제65조(운영의 공개), 제57조(사업의 종류), 제58조(소액대출: 삭제), 제59조(상호부조: 삭제), 제60조(사업의 이용), 제61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제63조(특별회계의 설치), 일부개정 (2019. 4. 22 보건복지부장관 인가)  <b>제8조(7차 개정)</b> 2020년 5월 9일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제14조(탈퇴),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 환급청구권), 제45조(임원의 정수), 제58조(운영의 공개), 제61조(사업의 종류), 제62조(사업의 이용) (2020.06.17. 보건복지부장관 인가)</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b></p> <p><b>제1조(시행일)</b>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b>제2조(1차 개정)</b> 2013년 2월 23일 일부개정  <b>제3조(2차 개정)</b> 2013년 7월 11일 일부개정  <b>제4조(3차 개정)</b> 2014년 2월 22일 일부개정 (2014. 4. 21 보건복지부장관 인가)  <b>제5조(4차 개정)</b> 2015년 2월 28일 일부개정 (2015. 4. 9 보건복지부장관 인가)  <b>제6조(5차 개정)</b> 2017년 4월 4일 제2조(목적),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제57조(사업의 종류) 일부개정  <b>제7조(6차 개정)</b> 2019년 2월 23일 제2조(목적),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제18조(출자), 제25조(대의원총회), 제29조(정기총회), 제42조(이사회 의 의사), 제44조(임원의 정수), 제27조(선거운동의 제한), 제2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제65조(운영의 공개), 제57조(사업의 종류), 제58조(소액대출: 삭제), 제59조(상호부조: 삭제), 제60조(사업의 이용), 제61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제63조(특별회계의 설치), 일부개정 (2019. 4. 22 보건복지부장관 인가)  <b>제8조(7차 개정)</b> 2020년 5월 9일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제14조(탈퇴),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 환급청구권), 제45조(임원의 정수), 제58조(운영의 공개), 제61조(사업의 종류), 제62조(사업의 이용) (2020.06.17. 보건복지부장관 인가)  <b>제9조(8차 개정)</b> 2021년 2월 27일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제18조(출자), 제28조(대의원총회), 제41조(이사회), 제50조(임원의 임기), 제61조(사업의 종류)</p>	



## 제7호 의안 **규약 변경(안) 승인의 건**

- 의결주문: 규약 변경(안)을 승인해 주십시오.
- 관계조항: 정관 제33조 제2호, 제34조 제1항

※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 제34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규약 변경사유

- 2020년 보건복지부의 정기감사에 따른 규약 변경 권고 사항
- 상위법(협동조합기본법) 위배에 따른 변경

### 참고

	정 관	규 약	규 정
의 결	<p>총회 (과반수 출석, 안건별 2/3이상 또는 1/2이상 찬성)</p> <p>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보건복지부장관) 인가</p>	<p>총회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p>	<p>이사회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p>
내 용	<p>목적, 명칭, 조직, 운영, 사업, 조합원 등 14개 필수사항</p>	<p>정관 이외의 조직, 사업에 관한 사항</p>	<p>정관, 규약 이외의 경미한 사항</p>
예 시	<p>표준정관(예시)</p>	<p>총회운영, 출자금감소, 배당, 현물출자 등</p>	<p>이사회 운영, 감사, 직원보수, 선거관리 등</p>



# 규약 변경(안) 신규대조표

## 1. 출자좌수 감소 규약

현행	변경(안)	비고
<p>제3조 【출자좌수의 감소】 ①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년도 말 30일전 이전까지 감소하고자 하는 출자좌수를 조합에 예고하고 당해 회계년도 말에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p> <p>② 출자좌수 감소를 신청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은 당해 회계년도 말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출자금을 환급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좌수 감소 통지시기에 관계없이 조합은 즉시 출자금을 환급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합원 자격 상실</li> <li>2. 탈퇴 및 제명</li> <li>3. 기타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li> </ol>	<p>제3조 【출자좌수의 감소】 ①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u>감소하고자 하는 출자좌수를 조합에 신청하고 이사회의 승인으로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u> &lt;개정, 2021. 2.27&gt;</p> <p>② &lt;삭제, 2021. 2.27&gt;</p> <p>③ <u>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의 총회 승인에 따라 반환한다.</u> &lt;개정, 2021. 2.2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합원 자격 상실</li> <li>2. 탈퇴 및 제명</li> <li>3. &lt;삭제, 2021. 2.27&gt;</li> </ol>	<p>협동조합기본법 위배 및 2020년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권고</p>

## 2. 단체출자에 관한 규약

현행	개정(안)	비고
<p>제4조 【출자에 따른 권한】 단체가 출자할 경우 단체는 조합의 사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운영에 관해서는 이사회, 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제4조 【출자에 따른 권한】 <u>단체가 출자할 경우의 총회 의결권은 해당 단체장 또는 단체장에게 위임을 득 한자만 사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운영에 관해서는 이사회, 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u> &lt;개정, 2021. 2.27&gt;</p>	<p>협동조합기본법 위배 및 2020년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권고</p>



## 제8호 의안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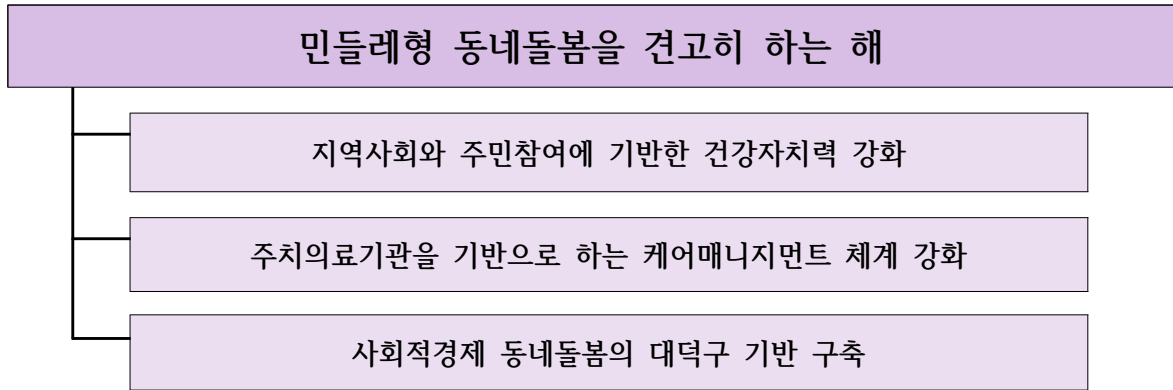
\* 사업계획은 요약본으로, 예산(안)은 정관 명시의 중요내용으로 실습니다.

- 의결주문: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해 주십시오.
- 관계조항: 정관 제33조 제4호

※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

# 1. 2021년도 사업계획(안)

## 1-1. 사업기초



지난해 우리의 방향은 ‘민들레형 동네돌봄을 만드는 해’로서 당사자와 지역주민이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중심으로 스스로 해결에 나서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개발, 발굴, 연계하는 노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공동체의 사회적경제 기반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해왔다.

민들레형 동네돌봄의 핵심역량은 1)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참여로 이뤄지는 건강반·건강리더 활동, 2) 주치의와 다학제팀의 일차의료·방문의료 서비스 제공, 3) 개인의 자립과 존엄한 삶을 위한 사람 중심의 케어매니지먼트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2021년은 ‘민들레형 동네돌봄을 견고히 하는 해’로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건강결정요인에 더욱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건강자치력을 향상하고, 지역주민과 의료·복지 종사자가 협동하는 돌봄 체계를 강화하며, 대덕 지역에 우선적으로 활동과 사업을 집중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모습과 시스템을 선도해 지역정착에 힘이 되고자 한다.

또한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건강·돌봄의 다양한 욕구와 수요를 대비하는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과 민들레의 협동을 통한 건강한 관계망이 더욱 구체적으로 결합되고 현실화할 수 있는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며, 이러한 민들레의 미션과 비전을 조합원과 공유·재고하여 2022년으로 다가오는 설립 20주년을 힘차게 맞이하고자 한다.

## 1-2. 기초 수행을 위한 전략

1) 지역사회와 주민참여에 기반한 건강자치력 강화의 전략으로,

- 5대 핵심지표 달성
- 건강반 활동
- 건강리더 교육·활동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동
- 민·민 협력,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지역사회 네트워크 참여 촉진

2) 주치의료기관을 기반으로 하는 케어매니지먼트 체계 강화의 전략으로,

- 일차의료기관 연계
- 질병예방·관리 활동
- 주치의 방문의료
- 다학제팀의 방문건강관리
- 주민 중심의 케어플랜과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서비스 발굴 및 개발

3) 사회적경제 동네돌봄의 대덕구 기반 구축의 전략으로,

- 사회적경제조직 인큐베이팅
- 동네돌봄형 도시재생 활동
- 대덕구 동네돌봄 권역별 네트워크 실행
- 보건의료·재가요양서비스 개발 및 제공

### 1-3. 5대 핵심지표 달성 목표

구 분	2020년 말 기준	2021년 목표	비고
1. 조합원	총 조합원 4,008세대	총 조합원 4,300세대	증감계 292명
2. 출자금	출자금 총 누계액 1,147,690,000원	1,177,690,000원	증감계 3천만원
3. 건강리더	2020년 17명 총 누적 231명	신규 20명 심화 10명 총 누적 261명	심화과정을 통한 건강리더 활동 기획
4. 건강반	총 46개 반원 292명	총 50개 반원 350명	
5. 스스로 조합비 조합원	총 251명	총 300명	49명 증가

## 2. 세부 사업 계획(안)

세부사업		수행부서
민들레 기초조직 강화 사업		조직협력국
<p>□ 미션 민들레의료사협 조합원(대의원, 건강반, 건강리더 등)의 참여 확대를 통한 조합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연대 및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로 지역주민의 건강자치력을 향상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주민 활동 기반을 구축한다.</p> <p>□ 비전 1. 건강반 조직운영체계 구성 및 활동 강화 2. 대의원 자치운영체계 및 기틀 마련 3. 동네돌봄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4. 지역사회 주민조직 및 단체와 연대 활동</p>		
구분	계획	달성목표
조합원	신입조합원 교육	· 민들레 이해 교육 반기별 1회 ·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
	스스로조합비 성과 보고	· 연간 스스로조합비 집행 내용을 총괄하는 소식지 발송 · 월 1회 정기 문자 발송
대의원	대의원 활동·성장	· 대의원자치회 운영 정례화, 활동 계획 수립 및 실행 · 대의원 줄기 교육, 대의원 단합회 · ‘민’모임 조직·운영
건강반	· 40개, 300명 조직·운영 · 조합원 비율 70%	· 조합원 중심 건강반의 건강증진과 예방 활동 · 조합 사업 및 참여 촉진 ·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자원 연계 · 반장 모임 1회, 성과공유 1회
건강리더	총 30명 기초 20명, 심화 10명	· 기본 양성과정 · 실천 활동을 위한 심화 과정
연대사업		
구분	계획	달성목표
지역공동체 활동	법1동 마을축제	법1동 마을축제 공동 주관
의료사협 연합회 활동	데이케어센터브랜드전략 의료복지안심주택TFT 등 연합회 활동 참여	민들레형 돌봄 브랜드 기획·준비
대덕구 자원봉사센터	· 청소년 ‘안녕’학교 · 자원봉사 리빙랩 사업	· 청소년 비대면 자원활동 개발 · 지산맛 사업과 연계하여창업인 발굴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업		
구분	계획	달성목표
도시재생 예비사업	중리동 동네돌봄형 도시 재생 주도	· 중리동 조합원 확대 및 활동가 조직 · 민관협치를 통한 거점 마련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회적경제조직 3개소 신 규 창업 지원	코로나19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창업아이디어, 창업 팀, 비즈니스 모델 발굴
돌봄협동조합 지원	돌봄협동조합 조직·운영 지원	돌봄협동조합 행정체계 지원으로 안착 도모
<b>스스로조합비 기부금 운용, 지역화폐 두루 관리</b>		
구분	계획	달성목표
스스로조합비	지역사회 보건예방활동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 노인,장애인,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 건강반 활동비, 건강리더 활동 및 교육 지원
	후원금 모집 운영	문자·카톡 등 감사 문자 발송, 홍보 리플렛 제작, 지원 내 역 보고서, 홍보물 제작
	기부금 활용 홍보	· 스조 매월 후원 감사 및 출금 예정 알림 12회 · 매월 1회 카드뉴스, 성과보고서 및 홍보물 제작 · 기부금 영수증 발행
두루	두루 수입·지출 관리	의료기관, 직원, 조합원의 두루 관리
<b>교육 및 민원</b>		
구분	계획	달성목표
직원법정교육	직원법정교육 진행	· 장애인식개선, 성희롱예방, 개인정보보호, 퇴직연금교 육 연내 실시 · 비대면 교육시 영상물 등 자료 제공
고객 민원	· 의료기관 민원 · 조합운영 민원	민원 절차 매뉴얼에 따라 대처
실습, 봉사 교육, 견학	· 의료실습생관리 · 자원봉사자 관리 · 교육, 견학 관리	· 원활한 실습 교육 관리 · 소개 ppt 표준안 제작
<b>민들레 홍보 활동</b>		
구분	계획	달성목표
정기간행물	종이 및 모바일 소식지	
온라인 홍보	홈페이지, 카톡채널, SNS	· 정보업데이트 및 꾸준하고 정기적인 홈페이지 관리 · 불편, 어려사항 개선 · 소식지 채널가입자 60% 확대 · 카톡채널이용 홍보물(카드뉴스, 영상 홍보물) · 페이스북, 밴드 관리로 sns 소통 전달력 강화
조합,의료기관 홍보물 제작	브로셔, 웹자보, 영상물, 부착물	통합 소개 브로셔 리뉴얼, 의료기관 부착물, 사업 웹자보, 비대면 영상 제작
언론 홍보·대응	보도자료 발행 취재, 촬영 협력	· 보도용 콘텐츠 개발 · 인터뷰 협력, 자료 전송, 관련자 연결
업무 협약	대외협력, 업무 협약	기업, 대학, 공공기관과 업무 협력·협약

세부사업	수행부서
<b>지역사회주치의 역할을 하는 일차의료기관 운영</b>	<b>의원</b>
<input type="checkbox"/> 미션: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아플 때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민들레 ) <input type="checkbox"/> 비전: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아플 때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민들레 )	



의료활동		
구분	계획	달성목표
비용감소	재고관리, 일회용품 줄이기	매출 대비 재고율 저감
의료기기 관리	산소포화도 구입	응급환자 빠른 대처
의료서비스질 개선	·대기실 모니터 설치 ·만성질환자관리 ·자가영양제	· 만족한 진료 · 대기시간 만성질환자 관리교육 방영 · 비대면 진료시 비용 발생 고지 · 의원, 검진 진행 상황표 작성
조합원 관리	조합원 교류, 조합원 관리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과 친밀한 유대 형성으로 진료 만족도 상승
예방진료관리	·만성질환자 확대 ·예방접종 관리	· 미등록 만성질환자 환자 등록 권유로 예방관리 · 예방접종 시기 문자 알림
지역사회연대	장주사, 왕진환자 발굴	미등록 환자 등록으로 예방 관리
기타 법률적 의료행위 등	대리처방 대처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 서류구비 후 가능 · 환자 내원
매출목표	매출 걱정 유지	· 만성질환, 장주사, 왕진 발굴 관리 · 내원 환자 관리

가치 활동		
구분	계획	달성 목표
조합원 조직	조합원 가입	· 30명 · 내원환자에게 조합 홍보물 안내 등으로 가입 유도
	스스로조합비조합원 가입	· 10명 · 조직팀과 연계관리 · 대기시간 홍보 안내
조합 활동 참여	조합관련 행사 참여	사전 공지를 통한 조율로 조합 행사 적극 참여
환자권리장전 준수	환자 결정권 사생활 보고	진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본인의 선택권 존중
학습과 성장	의료 지식 공부	꾸준한 학습으로 의료 지식 확장

세부사업	수행부서
지역사회주치의 역할을 하는 일차의료기관 운영	검진
<input type="checkbox"/> 미션: 건강을 건강할 때 지켜 주는 파수꾼!!! <input type="checkbox"/> 비전: 어려움을 이겨내는 당신의 선물!!! 검진은 민들레에서~~!!!	

의료활동		
구분	계획	달성목표
비용감소	· 전기용품 전원 확인 · 검진결과 메일/문자 발송	· 퇴근시 전원 확인 · 문진표 작성 메일 안내 권유
의료기기관리	· 산소포화도 구입 · 내시경 스코프/세척기 구입	· 휴대용 회복실 비치 · 내시경 환자 공급
의료서비스질 개선	· 검사 진행 후 다음 검사 안내 · 내시경 후 안부 확인 · 검사 누락 감소 · 비용 안내 확인	· 검사시 담당자 다음 검사 안내 · 내시경 후 안부 확인 · 비트 오더 확인 · 검진 진행표 확인
조합원 관리	· 위내시경 검진자/재방문 검진시 혈관 나이 검사 · 친밀감 형성, 만족감 증진	· 혈관 나이 검사시 경동맥초음파 중요성 안내 · 재내원 감사 표현
예방진료관리	· 위/대장내시경/초음파 추적관리자 검사 안내 · 간암검진대상자 A형예방접종안내 · 대장암검진자 대장내시경 중요성 안내 · 고연령 독거 노인 영양상태 검사	· 주치의 프로그램 활용하여 사후관리체계 마련 · A형간염 중요성 안내 · 대변통과 함께 문진표 안내 · 문진표 꼼꼼히 확인
지역사회연대	지역사회의료센터,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연계	지역사회의료센터,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연계하여 검진 대상자 확보
기타 법률적 의료행위 등	· 개인정보 관리 철저 · 원칙 준수	· 검진결과, 채용, CD등 개인정보누출 방지위해 관리대장 비치, 서명받기
매출목표	전년 대비 월 3% 상승	· 대장내시경 건수 상승 · e편한세상 홍보 · 국세청/경찰서 홍보

가치 활동		
구분	계획	달성 목표
조합원 조직	조합원 가입	· 50명 · 검진 만족도 높은 환자 적극 권유 · 급여 1·2종 환자 적극 권유
	스스로조합비조합원 가입	· 12명 · 조합원중 미가입자 적극 권유
조합 활동 참여	조합관련 행사 참여	사전 조율과 공지로 참여 강화
환자권리장전 준수	환자 알권리 결정권 존중	· 검진시 추가 검사의 충분한 설명 · 비대면 진료 접수시 진찰료 발생 부담 설명
학습과 성장	검사 내용과 안내 방법 통일	정기 회의로 공유

세부사업	수행부서
<b>지역사회주치의 역할을 하는 일차의료기관 운영</b>	<b>한의원</b>
<input type="checkbox"/> 미션: 새롭게 달라진 민들레 한의원 <input type="checkbox"/> 비전: 귀 기울여 듣고, 잘 소통하고, 화합하자.	

의료활동		
구분	계획	달성목표
비용감소	재활용 하기, 에너지 절약	소모품비 절약, 냉·난방에너지 절약
의료기기관리	· 물리치료기 점검	· 물리치료 만족도 상승
의료서비스질 개선	· 생활속 질병예방법 영상 안내 · 내부 소통	· 대기 시간 질병예방 인식 강화 · 내부소통으로 의료 질 상승
조합원 관리	· 약환 해피콜 · 침환자 이전 치료 반응 확인	· 해피콜 명단 작성 관리 · 한약 환자 불편 사항 기록
예방진료관리	· 환자와 소통	· 내원시 불만 해소 · 진료 전후 자세한 설명 · 물리치료시 과정 안내
지역사회연대	지역사회의료센터,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연계	지역주민 건강 증진
기타 법률적 의료행위 등	행정서류 발급 수수료 안내	행정서류 적절한 발급
매출목표	월 2.500만원 매출	연 3억원 매출
가치 활동		
구분	계획	달성 목표
조합원 조직	조합원 가입	· 24명 · 조합 안내 적극
	스스로조합비조합원 가입	· 12명 · 조합원중 미가입자 적극 권유
조합 활동 참여	조합관련 행사 참여	사전 조율과 공지로 참여 강화
환자권리장전 준수	환자 알권리 결정권 존중	· 환자의 궁금한 점 충분한 설명 · 질환의 원인 치료경과 내원일 등 안내
학습과 성장	몸과 마음 수련	면역력 증진, 마음 휴식

세부사업	수행부서
<b>지역사회주치의 역할을 하는 일차의료기관 운영</b>	<b>치과</b>
<input type="checkbox"/> 미션: 걱정 진료를 하자!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진료를 하자!! <input type="checkbox"/> 비전: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걱정 진료를 통하여 내 치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심 치과가 되자!!!	
의료활동	
구분	달성목표
비용감소	· 매출대비 재고율 감소 · 유통기간 관리
의료기기관리	· 진료기기 보강으로 환자와 직원 모두 만족하는 진료

	· 파노라마기기 업그레이드	
의료서비스질 개선	· 밝은 이미지	· 인사 잘하기 · 환경 개선
조합원 관리	· 리콜 검색	· 예약, 리콜 문자 발송
예방진료관리	· 스켈링&R/P(치주)치료	· 스켈링&RP 월 100건 이상
지역사회연대	협약진료, 방문활동	협약, 방문 참여
기타 법률적 의료행위 등	· 의료폐기물 관리 철저 · 적정 진료	· 의료폐기물 체크리스트 작성 · 의료 행위 기준안 확인
매출목표	월 4,500만원	연 5억 4천만원
<b>가치 활동</b>		
구분	계획	달성 목표
조합원 조직	조합원 가입	· 24명 · 진료 만족도 높은 환자에게 조합 가입 적극안내
	스스로조합비조합원 가입	· 12명 · 진료 만족도 높은 조합원에게 가입 적극 안내
조합 활동 참여	조합관련 행사 참여	사전 조율과 공지로 참여 강화
환자권리장전 준수	환자 알권리 결정권 존중	· 환자가 궁금한 점에 대해 충분한 설명 · 진료 후 만족도 확인
학습과 성장	의료 전문 지식 확장	정기 회의 공유

세부사업	수행부서	
<b>방문기반 의료서비스 제공</b>	<b>지역사회의료센터</b>	
<p>□ 미션: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건강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하고 신뢰받는 방문기반 의료시스템 만들기</p> <p>□ 비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우리나라에서 모범이 되는 지역의료 체계와 사례를 만든다.</li> <li>2. 서로 소통하며 성장하는 팀워크 만들고</li> <li>3. 지역의료의 건강자원들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연대하며</li> <li>4. 올해 활동을 책, 논문 등 기록물로 남긴다.</li> <li>5. 약물관리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약물오남용을 줄인다.</li> </ol>		
<b>보건의료서비스</b>		
구분	계획	달성목표
예방진료 관리	장애인주치의사업 정기진료 활성화	· 정기적 방문 및 진료 · 문자 안내
	약물관리 및 약물 줄이기	약물오남용 및 부작용 줄이기
의료서비스 모델개발	장애인주치의, 왕진, 가정간호, 방문재활 등	보건의료전문가 협력으로 방문의료서비스 제공 사례 책 또는 논문 발표
의료서비스 질 향상	민들레만의 방문의료 특화사업 I	· 연1회 대상자 재활 및 구강건강 욕구 파악 · 복지욕구 파악 서비스 연계
	민들레만의 방문의료 특화사업 II	· 발관리 어려운 대상자 발건강 관리 20명

	(예쁜 발 프로젝트)	· 발사진 촬영 · 프로토콜 작성
	민들레만의 방문의료 특화사업 III	· 방문 약물 관리서비스, 약물관리 체크리스트 만들기, 약 달력 제공 및 사용지원, 건강수첩 제작 및 활용 (지역사회의료센터 이용자 중 일부에게 시범적 적용 예정)
	고객관리	· 신뢰 형성 · 방문 전후/사후관리 철저
조합원 관리	장애인주치의사업 대상자 중 조합원 명단 작성	· 조합원에게 지역사회의료센터 홍보 · 조합원에게 생일 문자
비용감소	의료소모품 절약	· 의료기관과 물품 공동 구매 · 물품 관리 철저
	교통비 절감	· 근거리 도보 이동 · 장거리 이동 동선 설계
	통신비 절감	개인용 이용
기타	방문진료 자부담	· 카드 단말기 현장 결재 · 문진 전 자부담 안내
매출목표	연매출 2억 9천만원	방문진료/왕진, 가정간호 활성화
<b>건강증진 및 보건예방활동</b>		
구분	계획	달성 목표
보건예방 활동	건강검진	당해년도 검진대상자 검진 안내
	예방접종	꼭 필요한 예방접종 안내(필요시 방문 접종)
	금연	의원 금연 등록으로 약물 처방 및 보건소 금연프로그램 소개, 지속적지지 격려
	절주, 금주	· 대덕구중독통합관리센터 연계, 정보제공, 교육 · 건강반 활동
	생활체육	· 장애인체육회 연계, 장애인 운동교실 운영 · 시립장애인체육재활원 연계, 건강관리 · 장애인 체력 인증
	치매예방 및 치매인식 개선	· 치매예방 및 지역주민 치매 인식 개선 · 치매안심센터 연계, 치매 이해와 예방 교육
	<행복상담소> 참여	법1동, 중리동주민센터, 중리복지관 등 유관기관 연계, 상담 및 사례회의
<b>가치활동</b>		
구분	계획	달성목표
조합원 조직	조합원 가입	· 24명 · 방문 진료 및 장애인주치의 대상자 조합 가입 안내
	스스로조합비조합원	· 12명 · 호의적 조합원 권유
조합 활동 참여	조합관련 행사 참여	사전 공지 및 조율로 참여 강화
	지역사회의료센터 홍보	조합원 대상 교육, 홍보
환자권리장전 준수	환자의 알 권리	· 환자 및 가족의 권익옹호 · 제도, 서비스에 대한 숙지 및 설명, 동의구하기
학습과 성장	건강반, 건강리더	적극 참여

	학습과 나눔	집중사례관리를 통한 문제해결능력 키우기 비정기적인 책임기 모임 연명의료 사전의향서 작성 교육 받기
	선진지 견학	방문의료 모델 선진지 방문
지역사회 연계	재활협의체 구성 및 협력	대덕구청, 보건소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재활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참여
	장애인관련 기관 및 시설 발굴, 협약	· 지역사회연계기관, 공공기관, 의료기관 파악 · 건강협의체 활동 강화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기관 2곳 이상 장애인주치의 등록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 활동	세미나 개최
	사회적의료기관 연대회의	사회적의료기관과 정보교류

세부사업		수행부서
주민참여 동네돌봄 네트워크 구축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p>□ 미션: 사람 중심, 주민의 참여로 완성하는 동네돌봄</p> <p>□ 비전: 주민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삶의 질을 최대한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동네돌봄체계 구축 및 비즈니스모델 마련</p>		
<b>대덕구 동네돌봄</b>		
구분	계획	달성목표
돌봄상담 창구	권역별 상담창구 운영	· 상담 사례 50 이상 · 대덕구 중부권역, 북부권역 상담창구 운영
	온라인 상담창구 운영	· 온라인 상담 10 사례 이상 · 조인케어매니저협동조합 온라인 플랫폼 활용
케어매니지먼트	케어매니지먼트 운영	50사례 이상
지역돌봄 네트워크	케어회의 참석	돌봄사례회의 5회 이상
	네트워크회의 참석	돌봄서비스 확충 및 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 참석 5회 이상
돌봄서비스 확충	돌봄사각지대 지원서비스 확충	지원서비스 확충을 위한 신규사업 제안 및 운영
질병예방 건강증진	건강반 조직 및 운영	10개 이상(건강취약계층 만성질환관리)
	방문건강증진활동	ICT 활용한 경증치매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 치매 예방활동 진행
	예방 교육	만성질환관리 및 질병예방교육 2회 이상
자원조사 DB 구축	제도, 정책, 서비스자원리스트업	돌봄, 건강문제 관련 자원조사 DB 구축
돌봄협동조합인 큐베이팅	정기실무회의	돌봄협동조합 실무 확인 및 컨설팅 주1회
	사업연계 지원	돌봄협동조합 사업 연계

가치활동		
구분	계획	달성 목표
조합원 조직	조합원 가입	25명 이상
	스스로조합비조합원	10명 이상
	조합활동 참여	조합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일정 조율 참여
조합활동 참여	조합활동 참여	조합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일정 조율 참여
국가 및 지자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	· (R&D) 주민참여 커뮤니티케어 시스템지원 ICT통합솔루션개발사업 · (NON R&D) 지역공동체 기반의 커뮤니티케어와 지역화폐 플랫폼 연계를 통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보건복지부	경증치매어르신웰라이프 돌봄서비스	케어플랜을 통한 경증치매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20명 이상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시범사업	권역별 돌봄네트워크 구축 및 돌봄체계마련 40명 이상

세부사업		수행부서
<p style="text-align: center;"><b>민들레 건강화폐 '조각' 운영</b></p>		<p><b>조직협력국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지역사회의료센터</b></p>
구분	계획	달성목표
건강화폐 '조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기간: 2021.01.01.~12.31</li> <li>· 지급방법: 통장 수기 방식 기록</li> <li>· 지급기준: 건강증진활동, 질병예방활동, 돌봄활동, 교육활동 참여시</li> <li>· 유효기간: 2021.12.31.</li> <li>· 발급액: 4,000,000조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각'을 발행하여 활동 참여의 동기 부여와 촉진으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효과 증대</li> <li>· 건강리더 활동 촉진</li> </ul>
<p>□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의원 자치운영체계 기틀 마련을 통한 조합원 소통과 참여·활동 역량 강화</li> <li>○ 건강리더, 건강반 조직을 통한 조합원 확대 및 지역주민 건강자치력 향상</li> <li>○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조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민 활동 기반 구축</li> <li>○ 지역사회 내 민들레의료사협 확장</li> </ul>		

## 2. 2021년도 예산(안)

### 2-1. 예산 수립 기초

코로나-19에 따른 환경 변화 속에서 2020년도는 당초 예상 수치 보다 큰 성과를 이루어 냈다.

이러한 사태는 2021년도에도 지속되며 이로 인한 변수가 도출 될수 있지만, 의원의 적극적인 시범사업 등을 통한 지속적인 매출 상승과 한의원의 손익분기 매출 기대, 안착된 치과의 성과, 확장 이전하는 검진센터의 매출 증대 등과, 지역사회의료센터의 자립구조 완성,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의 사업으로 얻어지는 유무형의 매출 기여, 조직협력국의 자본(출자금) 증대 그리고 사무처의 비용 절감이 조합원과 지역주민간의 사업소 이용 등 협동으로 발현되어 2021년도에도 흑자를 예상하고 예산 편성을 하였다.

전년대비 예측 가능한 손실적인 측면으로 그동안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금이 종료되어 정부 지원금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검진센터와 한의원의 리모델링 비용, 진료시 최상의 판단을 위한 의료기기 추가 구매 등에 따른 비용 증가와 부족한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상승 요인을 감당하여야 할 중요한 요소라 생각된다.

그러나 민들레는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속에서도 20여년을 지속하여 온 경륜과 자랑스러운 4,000여 조합원이 계시기에 올해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으리라 본다.

조합원과 지역주민 및 임직원이 협동으로 일구어 지역의 소중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한 민들레를 더욱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충실히 하며, 조합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출자금 확충을 기대한다.



## 2-2. 예산 총칙

<제1조> 본 예산의 회계연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 2021년 회계연도 예산 총 규모는 다음과 같다.

관	항	목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수입	사업수익	대덕민들레	의원,검진	1,798,897,494	1,826,450,260	1,954,301,778
			한의원	258,089,405	233,792,540	230,000,000
			치과	415,899,532	496,478,195	684,000,000
		둔산민들레	치과	148,058,540	-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15,880,000	30,780,000	45,000,000
		지역사회의료센터			298,034,530	350,000,000
		조직협력국+사무처		6,945,453	5,618,184	3,800,000
	사업외수익	이자수익		1,668,593	1,273,995	1,370,000
		정부지원 및 보조금		140,378,396	131,316,222	47,2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699,000	-	-
		후원금		4,000,000	14,796,070	5,000,000
		잡이익		12,893,692	2,115,881	500,000
	<b>수입 합계</b>			<b>2,803,410,105</b>	<b>3,040,655,877</b>	<b>3,321,171,778</b>
	지출	사업비	교육,회의,연대,조직,홍보,보건예방		98,314,098	54,440,571
관리비		매출원가		314,189,222	282,679,842	338,013,210
		인건비(급여,퇴직연금,인적용역비)		1,645,513,309	1,846,619,864	2,012,601,800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174,796,141	125,911,859	192,950,175
		기타 판관비		448,827,643	613,307,147	621,495,383
기타		영업외 비용(이자비용 등)		57,491,006	50,019,901	42,120,000
<b>지출 합계</b>			<b>2,739,131,419</b>	<b>2,972,979,184</b>	<b>3,296,193,468</b>	
<b>수지 합계(수입합계-지출합계)</b>			<b>64,278,686</b>	<b>67,676,693</b>	<b>24,978,310</b>	

〈제3조〉 수입 및 지출명세는 다음의 제2-4호 단위부서별 2020년도 결산대비 예산 수지예산(안)과 같다.

〈제4조〉 예산의 집행은 당해년도 예산(안)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제5조〉 예산의 항간이용과 예비비의 사용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예산의 목간이용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사업량의 증가·세율변경·급격한 물가변동·특별사업의 실시·조직체계 및 기구의 변경·기타 대내외 지원금 등으로 인한 예산은 이사회 결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추가경정예산은 확정된 활동계획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를 얻어 집행하고 총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2-3. 자본예산

구 분	기관	품 명	예산금액(원)
의료기기	검진	내시경 장비(3월)	71,000,000
		내시경 게이트웨이(3월)	5,000,000
		디지털 엑스레이장비(3월)	30,000,000
	한의원	적외선 발열기 등(4월)	5,000,000
	치과	전자차트용 PC(3월)	2,000,000
	의료기기 소계		
시설장치	검진	이전 확장 리모델링(4월)	120,000,000
		간판(4월)	5,000,000
	한의원	이전 리모델링(4월)	60,000,000
		간판(4월)	3,000,000
	의원	대기실 리모델링(4월)	5,000,000
		간판(4월)	2,000,000
	시설장치 소계		
비품	사무처	사무 집기(책상 등) (7월)	3,000,000
	비품 소계		
소프트웨어	사무처	POS 리뉴얼 (5월)	15,000,000
	소프트웨어 소계		
총 계			326,000,000

2-4. 단위부서별 2020년도 결산대비 예산

계정 과목	민들레통합		일차의료센터					
	2020년통합결산 (프로젝트제외)	통합예산	의원·검진 결산	의원·검진 예산	한의원 결산	한의원 예산	치과 결산	치과 예산
I . 매 출 액	2,891,153,709	3,267,101,778	1,798,897,494	1,954,301,778. 20	233,792,540	230,000,000	496,478,195	684,000,000
II . 매 출 원 가	282,679,842	338,013,210	165,925,012	212,112,867	31,491,188	30,980,344	47,536,489	88,920,000
III.매 출 총 이 익	2,608,473,867	2,929,088,568	1,632,972,482	1,742,188,912	202,301,352	199,019,656	448,941,706	595,080,000
IV. 판매비와관리비	2,640,279,441	2,916,060,258	1,145,116,438	1,374,349,297	238,113,482	237,697,511	411,917,904	434,027,409
임 직 원 급 여	1,707,145,960	1,856,863,200	750,390,420	866,000,000	151,158,820	151,200,000	272,530,530	267,000,000
퇴 직 급 여	130,201,014	154,738,600	59,411,230	72,166,666	14,824,180	12,600,000	20,468,217	22,250,000
복 리 후 생 비	152,040,035	151,527,284	51,821,672	61,600,000	15,095,950	12,500,000	22,919,695	23,340,000
여 비 교 통 비	4,177,647	4,152,447	1,946,512	100,000	12,500			
통 신 비	10,416,976	10,524,090	3,590,812	3,600,000	1,302,090	1,300,000	501,536	600,000
수 도 광 열 비	3,378,128	2,894,070	2,167,670	900,000	254,170	250,000	279,854	300,000
전 력 비	20,156,227	19,563,734	8,356,681	8,000,000	3,749,810	4,000,000	3,274,481	3,480,000
세 금 과 공 과 금	52,231,267	53,297,550	20,812,499	21,000,000	5,568,340	5,500,000	7,090,490	7,650,000
감 가 상 각 비	66,859,209	147,956,532	54,656,984	113,602,096	790,499	24,043,837	1,710,358	3,356,876
지 급 임 차 료	53,080,000	39,600,000		19,800,000	23,636,000	6,600,000	13,200,000	13,200,000
수 선 비	9,408,360	7,200,000	959,900	2,000,000	97,300	100,000		100,000
보 험 료	44,593,740	35,800,000	13,166,985	14,400,000	3,491,720	3,500,000	5,371,030	5,500,000
교 육 훈 련 비	4,574,475	7,698,000	2,451,000	1,794,000	130,000	130,000	480,000	480,000
도 서 인 쇄 비	1,536,300	1,221,000	55,000	55,000	216,000	216,000	331,500	250,000
회 의 비	8,955,860	11,860,000	1,597,000	1,920,000	383,060	360,000	498,880	480,000
소 모 품 비	22,480,590	24,000,000	7,434,199	8,500,000	1,219,460	1,000,000	1,660,910	4,000,000
지 급 수 수 료	182,137,018	213,975,000	127,057,445	128,655,000	4,067,733	4,000,000	49,174,498	60,000,000
건 물 관 리 비	5,424,378	5,584,000		1,584,000	1,369,000		1,304,230	1,500,000
협 회 비	4,000,000	3,340,000			520,000	520,000		
무형고정자산상각	5,972,650	5,393,643	1,590,334	154,000			123,200	20,533

계정 과목	민들레통합		일차의료센터					
	2020년통합결산 (프로젝트제외)	통합예산	의원·검진 결산	의원·검진 예산	한의원 결산	한의원 예산	치과 결산	치과 예산
연 대 활 동 비	16,209,800	18,474,900	444,100					
조 직 활 동 비	8,828,311	34,500,000						
철 거 비	34,000,000	-						
기 금 사 업 비	-	-			-		-	
홍 보 활 동 비	7,902,973	11,480,000	12,000	500,000	91,300			
인 적 용 역 비	9,272,890	1,000,000	4,400,000					
보 건 예 방 사 업 비	7,969,152	5,000,000	32,793,995		95,000		332,500	
조합원건강지원비	67,326,481	78,416,208		48,018,534	10,040,550	9,877,674	10,665,995	20,520,000
기 부 금 사 업 비	22,715,120	47,659,880						
기부금사업비지원금	-22,715,120	-47,659,880						
예 비 비	-	10,000,000						
<b>V. 영업 이익</b>	31,805,574	13,028,310	487,856,044	367,839,615	35,812,130	-38,677,855	-37,023,802	161,052,591
<b>VI. 영업 외 수익</b>	149,502,168	54,070,000	4,012,647	50,000	519,810	10,000	10,193,247	10,000
이 자 수 익	1,273,995	1,370,000	12,631	50,000	12,160	10,000	22,653	10,000
정부지원및보조금	131,316,222	47,200,000			500,000		10,162,800	
후 원 금	14,796,070	5,000,000	4,000,000					
잡 이 익	2,115,881	500,000	16		7,650		7,794	
<b>VII. 영업 외 비용</b>	50,019,901	42,120,000	2,112,695	3,620,000	810	-	4,340	-
이 자 비 용	46,316,665	41,600,000	2,112,086	3,600,000				
무형자산처분손실	2,000	-						
보상비	705,190	-						
유형자산처분손실	2,539,262	-						
잡 손 실	456,784	520,000	609	20,000	810		4,340	
<b>VIII. 법인세차감전이익</b>	67,676,693	24,978,310	489,755,996	364,269,615	-35,293,130	-38,667,855	47,212,709	161,062,591
<b>IX. 법인세</b>	-	-						
손 익	67,676,693	24,978,310	489,755,996	364,269,615	-35,293,130	-38,667,855	47,212,709	161,062,591

계정 과목	조직협력국 + 사무처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지역사회의료센터 결산	지역사회의료센터 예산
	사무처 결산	조직협력국+사무처 예산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결산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예산		
I. 매출액	5,618,184	3,800,000	30,780,000	45,000,000	298,034,530	350,000,000
II. 매출원가	-				5,415,841	6,000,000
III. 매출총이익	5,618,184	3,800,000	30,780,000	45,000,000	292,618,689	344,000,000
IV. 판매비와관리비	540,408,152	563,431,066	75,294,005	21,345,414	211,170,558	285,209,561
임직원급여	273,277,610	325,000,000	54,588,310	7,663,200	171,108,850	240,000,000
퇴직급여	22,869,140	27,083,333.33	3,931,338	638,600	15,056,421	20,000,000
복리후생비	33,145,110	33,400,000	8,496,580	8,863,614	11,823,670	11,823,670
여비교통비	995,900	1,000,000	153,500	100,000	2,952,447	2,952,447
통신비	4,782,718	4,000,000	590,472	600,000	424,090	424,090
수도광열비	1,607,784	1,000,000	239,090	50,000	194,070	194,070
전력비	4,400,479	3,000,000	826,930	880,000	203,734	203,734
세금과공과금	12,746,727	14,000,000	1,224,850	400,000	4,747,550	4,747,550
감가상각비	21,697,609	6,953,723				
지급임차료	16,244,000					
수선비	7,142,600	5,000,000				
보험료	15,727,570	10,000,000	3,559,750	150,000	2,809,870	2,250,000
교육훈련비	3,025,600	5,000,000			414,000	294,000
도서인쇄비	724,800	500,000	110,000	200,000	110,000	
회의비	5,950,977	8,000,000	315,900	600,000	546,893	500,000
소모품비	9,644,400	10,000,000			296,860	500,000
지급수수료	20,099,264	20,000,000	308,525		197,103	1,320,000
건물관리비	2,751,148	2,500,000				
협회비	3,480,000	2,820,000				
무형고정자산상각	5,541,450	5,219,110				
연대활동비	16,209,800	17,474,900		1,000,000		

계정 과목	조직협력국 + 사무처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지역사회의료센터 결산	지역사회의료센터 예산
	사무처 결산	조직협력국+사무처 예산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결산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예산		
조 직 활 동 비	8,828,311	34,500,000				
철 거 비 등	34,000,000					
기 금 사 업 비	-		-		-	
홍 보 활 동 비	7,591,673	10,980,000				
인 적 용 역 비	1,876,350	1,000,000	361,930			
보 건 예 방 사 업 비	6,047,132	5,000,000	586,830		285,000	
조 합 원 건 강 지 원 비	-					
기 부 금 사 업 비	21,230,700	45,659,880	925,020	1,000,000	559,400	1,000,000
기부금사업비지원금	-21,230,700	-45,659,880	-925,020	-1,000,000	-559,400	-1,000,000
예 비 비		10,000,000				
<b>V . 영 업 이 익</b>	534,789,968	-559,631,066	44,514,005	23,654,586	-81,448,131	58,790,439
<b>VI. 영 업 외 수 익</b>	108,139,448	28,000,000	27,382,079	26,000,000	3,236,321	-
이 자 수 익	1,193,302	1,300,000	10,813		3,831	
정부지원 및 보조금	94,069,680	21,200,000	26,583,742	26,000,000		
후 원 금	11,796,070	5,000,000			3,000,000	
잡 이 익	1,080,396	500,000	787,524		232,490	
<b>VII. 영 업 외 비 용</b>	45,376,867	38,500,000	194,731	-		-
이 자 비 용	44,627,864	38,000,000				
무형자산처분손실	1,000					
보 상 비	51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					
잡 손 실	237,003	500,000	194,731			
<b>VIII. 법 인 세 차 감 전 이 익</b>	-472,027,387	-570,131,066	-17,326,657	49,654,586	84,684,452	58,790,439
<b>IX . 법 인 세</b>	-					
손 이 익	-472,027,387	-570,131,066	-17,326,657	49,654,586	84,684,452	58,790,439





## 제9호 의안 **차입금 한도 승인의 건**

- 의결주문: 2021년 회계연도 차입금 최고 한도는 현재의 차입금 1,473,018,016원을 포함하여 총 합계액 기준 20억 원 이내로 하는 것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 관계조항: 정관 제33조 제10호

※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0.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 제10호 의안 2020년 조합원수 및 출자금 확정 승인의 건

- 의결주문: 2020년 12월 31일 기준, 총 조합원수 4,008명, 출자금 1,147,690,000원을 확정하여 주십시오.

■ 출 자 금	1,147,690,000원
■ 출 자 좌 수	114,769좌
■ 출자 예치금	4,436,410원
출자금+출자예치금	1,152,126,410원

※ 1좌는 1만원으로, 1만원 미만의 출자금은 등기 출자액에 포함되지 않고 출자예치금으로 분류됩니다.



**\*\* 검진센터 확장 이전 특별 결의(안) \*\***

- 주문사항 : 검진센터 확장 이전을 결의하여 주십시오.

## 검진센터 확장을 위한 특별 결의(안)

### ■ 목적

- 그동안 건강검진센터의 공간 협소로 인한 검진 수검자들이 불편을 겪어 왔음.
- 이를 위해 한의원 건물 매입을 통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성을 해소키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건물간의 일조권 문제로 엘리베이터 설치가 최종 불가함을 인지하여 건물 매입 하지 않음.
- 그 대안으로, 협소한 검진센터와 잉여공간이 발생하는 한의원 공간을 서로 교체하고자 함.
- 조합원과 주민이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검진센터 공간 확장을 추진하여 전면 리모델링 예정.
- 조합원과 주민의 마음을 모아 특별 증자 및 후원, 고객유치 홍보 활동을 힘있게 펼쳐 나가고자 정기총회에서 대의원 특별 결의를 요청함.

### ■ 이사회 승인일

- 2021년 1월 28일, 1월 정기 이사회 제3호 의안 승인

### ■ 현황

- 검진센터 : 약 25평형 (조합건물 2층)
- 한 의 원 : 약 50평형 (임대건물 2층, 임대보증금 5,000만원, 월세 220만원)

### ■ 일정

- 2021년 2월 15일 검진센터 공간(현 한의원) 인테리어 착수
  - 공사 소요기간 : 약 3~4주
- 한의원의 경우, 원장 교체 시기와 맞물려 휴진
  - 직원 2인에 대한 경영상 귀책 사유로 70/100 휴업 급여 지급
- 2021년 3월 15일 한의원 공간(현 검진센터) 인테리어 착수
  - 공사 소요기간 : 약 3주

### ■ 검진센터 진료 개시일

- 2021년 3월 22일 검진센터 확장 이전 진료개시 예정
  - 검진센터 휴진 최소화
- 2021년 4월 1일 이전 진료개시 예정 (※공사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기대효과

- 신규 검진 장비 도입으로 검진 정확도 향상
- 넓고 쾌적한 공간 확보하여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의료 서비스 향상
- 노인·장애인 위한 복도 공간 개선 효과
- 이용환자 증가와 조합원 가입 증대 기대

※ 특별 증자 조합원을 위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Mindlle Health Welfare Social Cooperative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63번길 26(법동)

의 원 042)638-9012

한의원 042)638-9013

치과의원 042)638-2275

건강검진센터 042)716-5002

지역사회의료센터 042)716-7001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042)638-9043

조합 사무실 042)638-9053

대표번호 042) 638-9042 / fax 042) 638-9055

---